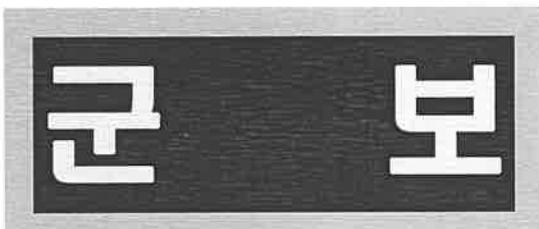


고 창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관(부서)의 장



제545호 2016. 10. 24. (월)

【조례】

- | | |
|---|----|
| ○ 고 창 군 조례 제2259호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 1 |
| ○ 고 창 군 조례 제2260호 고창군 에너지 기본 조례 | 3 |
| ○ 고 창 군 조례 제2261호 고창군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11 |
| ○ 고 창 군 조례 제2262호 고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 | 14 |

【훈령】

- | | |
|---|----|
| ○ 고창군 훈령 제1018호 고창군 청원경찰용 가스총 관리규정 발령 | 17 |
| ○ 고창군 훈령 제1019호 고창군 무기계약근로자의 취업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 발령 | 23 |

【고시】

- | | |
|---|----|
| ○ 고창군 고시 제2016-71호 고창군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 80 |
| ○ 고창군 고시 제2016-73호 재해위험 저수지 지정해제 고시 | 82 |
| ○ 고창군 고시 제2016-72호 고창 군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84 |

【이면계속】

회 람											
--------	--	--	--	--	--	--	--	--	--	--	--

발행 고 창 군(편집 자치행정과 ☎ 063-560-2326)

○ 고창군 고시 제2016-74호 고창군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91
○ 고창군 고시 제2016-75호 흥덕면 농촌중심지(선도지구)활성화사업 기본계획 고시	93
○ 고창군 고시 제2016-76호 고창군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94
○ 고창군 고시 제2016-77호 고창 군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96
○ 고창군 고시 제2016-78호 고창군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99
○ 고창군 고시 제2016-80호 고창군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101
○ 고창군 고시 제2016-81호 지적기준점(지적도근점)폐기 고시	103
○ 고창군 고시 제2016-83호 재해위험 저수지 지정고시(남동 1제)	105

【공 고】

○ 고창군 공고 제2016-894호 교촌지구내 사유재산(건물)소유권 사실확인 공고	107
○ 고창군 공고 제2016-900호 고창 황산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등의 의견청취 열람 공고	108
○ 고창군 공고 제2016-931호 고창 군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인가 전 열람 공고	109
○ 고창군 공고 제2016-966호 2016년 고창군 재정 고시	113
○ 고창군 공고 제2016-972호 2016 여성농업인 생생바우처지원 4차 신청접수 모집 공고	115
○ 고창군 공고 제2016-4호 2016년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시 공고	121
○ 고창군 공고 제2016-6호 제26회 동리대상 수상후보자 모집	123
○ 고창군 공고 제2016-1016호 분묘개장공고 1차(고창 자연마당 조성사업)	126
○ 고창군 공고 제2016-8호 제29회 전국 어린이 판소리 왕중왕 대회 모집 공고	127
○ 고창군 공고 제2016-5호 2016년 하반기 수질검사 결과 공고	131
○ 고창군 공고 제2016-1074호 고창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134

【획 보】

○ 2016 종합민원과 신축신고-239	(2016.8.1)	(해리면 서강열)도로지정	155
○ 2016 종합민원과 신축신고-240	(2016.8.1)	(대산면 무안박씨)도로지정	157
○ 2016 종합민원과 신축신고-48	(2016.8.9)	(고창읍 김성규)도로지정	159

○ 2016 종합민원과 신축신고-257	(2016.8.9)	(고창읍 오미)도로지정	161
○ 2016 종합민원과 신축신고-258	(2016.8.9)	(고창읍 유승)도로지정	163
○ 2016 종합민원과 신축신고-265	(2016.8.25)	(고창읍 권종심)도로지정	165
○ 2016 종합민원과 신축신고-266~268	(2016.8.26)	(성송면 주재철.주재민.주용환) 도로지정	167
○ 2016 종합민원과 신축신고-273	(2016.8.31)	(고창읍 조임환)도로지정	173
○ 2016 종합민원과 신축신고-284	(2016.9.8)	(고창읍 이영희)도로지정	175
○ 2016 종합민원과 신축신고-289	(2016.9.20)	(신림면 유정길)도로지정	177
○ 2016 종합민원과 신축신고-295	(2016.9.22)	(고창읍 유양종)도로지정	179
○ 2016 종합민원과 신축신고-297	(2016.9.23)	(고창읍 김영열)도로지정	181
○ 2016 종합민원과 신축신고-60	(2016.9.26)	(고창읍 김정남)도로지정	183
○ 2016 종합민원과 신축신고-302	(2016.10.5)	(고창읍 김병옥)도로지정	185

고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창 군 수 빵 우



2016년 9월 26일

고창군 조례 제 2259 호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호를 같은 조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60조에 따른 지방재정운용상황의 공시

7.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나. 재정투자사업 실사에 관한 사항

다.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관련한 주요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라.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마. 민간투자사업 시행자 지정 및 대상사업 위주에 관한 사항

고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창 군 수

2016년 9월 26일

고창군 조례 제 2259 호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호를 같은 조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60조에 따른 지방재정운용상황의 공시
7.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 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나. 재정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사항
 - 다.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 라.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마. 민간투자사업 시행자 지정 및 대상사업 취소에 관한 사항

고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창군 에너지 기본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창 군 수

27

우 정



2016년 9월 26일

고창군 조례 제 2260 호

고창군 에너지 기본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고창군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지역사회 구성원의 역할과 책무를 규정하고, 이를 통하여 에너지이용의 효율화와 에너지절약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에너지 관련 시책을 추진한다.

1.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 구축 및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실현
2. 산·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의 생산 및 이용·보급 촉진
3. 에너지 저소비형 지역구조 전환을 위한 에너지수요의 지속 관리
4. 산업·환경·교통·건축 등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에너지시책사업 추진
5. 에너지이용 효율의 극대화 및 에너지산업의 경쟁력 고려
6.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 등

고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창군 에너지 기본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창 군 수

2016년 9월 26일

고창군 조례 제 2260 호

고창군 에너지 기본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고창군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지역사회 구성원의 역할과 책무를 규정하고, 이를 통하여 에너지이용의 효율화와 에너지절약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에너지 관련 시책을 추진한다.

1.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 구축 및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실현
2.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의 생산 및 이용·보급 촉진
3. 에너지 저소비형 지역구조 전환을 위한 에너지수요의 지속 관리
4. 산업·환경·교통·건축 등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에너지시책사업 추진
5. 에너지이용 효율의 극대화 및 에너지산업의 경쟁력 고려

6.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 등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너지”란 연료·열·전기를 말한다.
 2.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란 최소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비용으로 인간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실제적·정책적·기술적 체계를 말한다.
 3. “연료”란 석유, 석탄, 가스, 신·재생에너지 그 밖에 열을 발생하는 열원(핵연료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4. “온실가스”란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가스로서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등을 말한다.
 5.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에너지를 말한다.
 6. “고효율에너지기자재”란 에너지 효율이 높거나 에너지절약 효과가 우수한 에너지 사용 자재를 말한다.
 7. “미활용에너지”란 폐기물 소각열, 하수처리장의 메탄가스, 건물 등의 배기열을 말한다.
 8. “사업자”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사업장·장비 그 밖의 시설과 에너지를 전환하여 사용하는 시설을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9. “환경표지인증제품”이란 동일한 다른 제품에 비하여 생산·유통·사용·폐기 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제품으로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0조에 따라 인증 받은 제품을 말한다.
 10. “자발적 협약”이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8조에 따라 사업자가 이산화탄소의 배출감소를 위한 목표와 그 이행 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정부나 군과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11. “산업 부문”이란 산업체에서 사용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12. “수송 부문”이란 수송 과정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13. “건물 부문”이란 건축물의 건축이나 유지관리에 사용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14. “공공 부문”이란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및 출연 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15. “민간단체”란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하여 연구, 조사, 군민참여활동 등을 하는 단체와 에너지관련 연대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2장 에너지 이용 주체별 권리와 책무 등

- 제4조(군의 책무) ① 군은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국가 정책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군은 에너지시책 및 관련 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수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군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홍보 및 교육을 하여야 한다.
- ④ 군은 학교·군민·민간단체·연구기관의 연구 및 홍보 사업 등의 자발적인 에너지 이용합리화 활동을 유도하고 지원 시책 및 재원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⑤ 지역특성에 맞는 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의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에너지소비로 인한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유통·판매·처리의 전 과정을 저소

- 비·고효율형 에너지절약 시설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사업자는 군의 에너지시책의 수립을 위한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장에서 생산·소비되는 에너지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④ 사업자는 학교·군민·민간단체·연구기관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에너지 이용 합리화 활동이 지역사회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② 군민은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지인 증제품을 우선 구매·사용하도록 노력하고, 제품을 폐기할 때에는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군민은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사용하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군민은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적인 에너지이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부문별 에너지 관련 시책

- 제7조(공공부문 에너지시책) ① 군수는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민간부문의 에너지절약 분위기를 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연도별 에너지절감 목표의 설정·관리
2.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사용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건물 신축 시(증·개축 포함) 고효율 제품 및 환경표시 인증제품 사용
3. 사무용 기기를 신규로 구입하거나 교체할 경우, 절전형 사무기기 및 가전기기 보급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에너지 절약마크 표시제품 사용
4. 군 및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모든 시설의 조명기구 교체·설치 시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설치

② 군수는 공공부문의 에너지절약 시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의 특성에 맞는 에너지절약 및 친환경에너지 이용 활성화 사업의 추진

2. 공공건물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한 에너지관리진단 실시

3. 관용차량 구입 시 경차 및 에너지효율이 높은 차량 구입

4. 계절별 실내 적정온도 준수

③ 군수는 에너지관련 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토목 공사를 계획·시행할 경우에는 에너지절약 제품의 사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산업부문 에너지시책) ① 군수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8조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용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제14조에 따라 에너지 절약형 시설에 투자하는 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 전문 기업을 지원하는 정부의 지원정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를 위하여 산업체의 신·재생에너지 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

제9조(건물부문 에너지시책) ① 군수는 건축물에 지열 냉난방시설, 태양 광 및 태양열 설비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권장하여야 하며 필요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 시 건축주가 신·재생에너지 설비와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시공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사용하도록 적극 유도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에너지 효율화관련 업무의 지원 및 에너지 절약형 건축을 권장하기 위한 업무지침 또는 가이드북을 발간하여 배포할 수 있다.

제4장 에너지 활동에 대한 지원

제10조(재정 지원 등) ① 군수는 군민·사업자·민간단체·연구기관이 지속가능한 에너지이용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조사·연구 등을 수행할 경우 필요한 정보·기술·재정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민·공공기관·단체 등에 에너지절약을 유도하는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2. 취약계층 등 전력효율향상사업 (LED 조명기구 개선 등)
3. 서민층 가스안전시설 지원사업
4. 주택에너지 효율화 사업(에너지 효율향상 및 단열개선 등)
5. 에너지 관련 교육·홍보·포상·행사 등에 대한 필요한 경비(캠페인, 에너지 진단, 교육 등)
6. 에너지 절약시책 등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주민 및 단체에 대한 인센티브(재래시장 상품권 등) 지급
7. 그 밖에 군에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및 에너지 절약 시책 사업 등

③ 군수는 신·재생에너지,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및 미활용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에 힘쓰는 군민·공공기관·단체에게 신·재생에너지,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및 미활용에너지 설비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에너지절약 시책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고창군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5장 에너지위원회 설치·운영

제11조(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에너지 절감 및 에너지 이용효율화 방안 등의 에너지 시책 등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고창군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에너지 관련 기본정책의 개발 및 평가
 2. 에너지의 개발과 이용 보급 촉진 방안 마련
 3. 에너지절약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 마련
 4. 민간 에너지절약사업 추진에 따른 평가
 5. 신·재생에너지 지원 심의 (단, 국·도비 지원과 연계된 사업 제외)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군수, 재무과장, 환경위생과장, 민생경제과장
2. 위촉직 위원 : 에너지 관련 학계·전문기관·협회·사회단체의 관련 전문가 등 그 밖에 에너지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의견을 갖춘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에너지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 및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창군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창 군 수 약 우 정



2016년 9월 26일

고창군 조례 제 2261 호

고창군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를 위하여 고창군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① 고창군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관계행정기관 공무원·교육자·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 지원

고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창군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창 군 수

2016년 9월 26일

고창군 조례 제 2261 호

고창군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를 위하여 고창군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① 고창군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 교육자 ·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 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 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 지원

5. 청소년 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관계기관에 재임하고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기만료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회의 및 의결)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 업무팀장으로 한다.

제8조(회의록) 간사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한다.

제9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관계 공무원, 청소년관계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회의 출석자에 대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고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창군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창 군 수  우



2016년 9월 26일

고창군 조례 제 2262 호

고창군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

고창군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신용카드등을 이용한 납부) 상수도사용자 등은 상수도요금, 급수공사비 및 수수료 등 군수가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별표 3] 중 상수도 업종별 요율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창군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창 군 수

2016년 9월 26일

고창군 조례 제 2262 호

고창군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창군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신용카드등을 이용한 납부) 상수도사용자 등은 상수도요금, 급수공사비 및 수수료 등 군수가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별표 3] 중 상수도 업종별 요율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상수도 업종별 요율표

업 종 별	단 계 별	요금(톤/월)	비 고
가정용	1-10	420	
	11-20	440	
	21-30	590	
	31이상	690	
일반용	1-20	750	
	21-50	970	
	51-100	1,130	
	101-300	1,260	
	301이상	1,400	
대중탕용	1-300	1,000	
	301-500	1,240	
	501이상	1,350	
산업용	1이상	450	

고창군 청원경찰용 가스총 관리규정을 발령한다.

고 창 군 수

2016년 9월 22일

고창군 훈령 제429호

고창군 청원경찰용 가스총 관리규정

고창군 청원경찰용 가스총 관리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붙임 고창군 청원경찰용 가스총 관리 규정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창군 훈령 제429호

고창군 청원경찰용 가스총 관리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가스총의 보관관리와 사용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관관리책임자) 가스총 배부시설 및 책임자는 별표 1과 같이 한다. 단, 근무시간외에 당직자가 있을 경우에는 당직사령이 보관·관리책임자가 되며, 당직자중 청원경찰이 있을 경우에는 청원경찰이 보관·관리·사용책임자가 된다.

제3조(보관) ① 가스총 보관 장소는 보관관리·사용자가 근무하는 주사무실 또는 당직실로 한다.

② 가스총은 잠금장치가 있는 곳에 넣어 보관하여야 하며, 필요시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 ① 가스총 사용은 방범 및 보안 관리에 위험이 있을 때 보관·관리책임자의 승인 하에 사용할 수 있으며, 긴급하게 사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사후 보고한다.

② 군수 및 보관·관리책임자는 필요에 의하여 가스총 사용을 명할 수 있다.

제5조(인계·인수) 근무시간 중·근무시간외 보관·관리책임자는 별지 제1호서식 인계인수부에 의하여 정확히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제6조(사고발생 및 조치) 보관·관리책임자는 가스총의 보관관리 소홀 및 주의태만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상세히 기입한 경위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가스총 배부 시설

연 번	관리부서	시설명	보관·관리책임자		수 량 (정)	비 고
			정	부		
합계		11개소	13명		13	
1	문화관광과	고창읍성	문화재팀장	청원경찰	1	
2		고인돌박물관	고인돌유적 팀장	청원경찰	1	
3	산림공원과	선운산도립공원	선운산공원 팀장	청원경찰	1	
4	재무과	군청(경비실)	재산관리 팀장	청원경찰	2	
5	의회사무과	의회	의정팀장	청원경찰	1	
6	환경시설사업소	가축분뇨처리장	가축분뇨 팀장	청원경찰	1	
7	체육청소년 사업소	청소년수련관	청소년팀장	청원경찰	1	
8		유스호스텔	청소년팀장	청원경찰	1	
9		공설운동장	체육시설 팀장	청원경찰	1	
10		군립체육관	체육시설 팀장	청원경찰	1	
11	상하수도사업소	통합배수지	상수도팀장	청원경찰	2	

[별지 제1호서식]

가 스 총 인 계 인 수

구 분 일 시	인 계 자			인 수 자			비 고
	직	위	성 명	직	위	성 명	

[별지 제2호서식]

가스총 사용 보고

사용 일시	
사용자 직 :	. 성명:
	<육하원칙에 의거 작성>
사용 내용	

년 월 일

보고자(부서장) :

(서명)

고창군 무기계약근로자의 취업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발령한다.

고 창 군 수

2016년 9월 22일

고창군 훈령 제428호

고창군 무기계약근로자의 취업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고창군 무기계약근로자의 취업관리 규정 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붙임 고창군 무기계약근로자의 취업관리규정일부개정안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창군 훈령 제428호

고창군 무기계약근로자의 취업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고창군 무기계약근로자의 취업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고창군 무기계약근로자의 취업관리규정”을 “고창군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창군(본청·의회사무과·직속기관·사업소·읍·면)에서 근로하는 공무직 근로자의 채용, 자격기준·보수·신분관계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인력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무직근로자”란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 중 “무기계약근로자”를 “공무직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로, “고창군수”를 “군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인사부서”란 근로자의 징원과 현원관리 및 채용·복무 등을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을 말한다.

제2조 제1항 제5호 중 “기획예산실 예산팀장”을 “부서의 예산팀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7. “관리부서”란 공무직근로자의 사용 및 복무를 관장하는 본청·의회사무과·직속기관·사업소·읍·면을 말한다.

8. “관리부서의 장”이란 실·과장, 의회사무과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읍·면 면장을 말한다.“

제4조 제1항 중 “등 단순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을 “농기계수리 등 단순 업무에 종사 또는 그 밖에 일일 근무시간 중 종일 사무실 근무를 요하지 않는 인력”으로 하고, 제2항 중 “채용부서”를 “관리부서”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무기계약근로자”를 “공무직근로자”로 한다.

제6조 제1항 중 “정수를”을 “정원을”로, “무기계약 근로자의 직종별 정수는”을 “공무직근로자의 직종별 정원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수를”을 “정원을”로, “채용부서”를 “관리부서”로 한다.

제7조 중 “채용부서는 제8조 및 무기계약근로자”를 “인사부서는 제8조 및 공무직근로자”로 한다.

제8조 제1항 중 “무기계약”을 “공무직근로자로의”로, “무기계약근로자로 확정하여야 한다”를 “전환 평가 및 인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공무직 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무기계약근로자”를 “공무직근로자”로, “예산부서·채용부서·급여”를 “예산부서·관리부서·급여”로 한다.

제9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인사부서에서는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신규채용절차에 따라 채용해야 하며, 다만 청원경찰 및 청원산림보호직원,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관리부서의 요구에 따라서 인사부서에서 채용한다.

제9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채용부서”를 “인사부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무기계약근로자”를 “공무직근로자”로, “채용부서”를 “관리부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무기계약인사위원회”를 “공무직 인사위원회”로, 같은 항 후단 중 “무기계약근로자”를 각각 “공무직근로자”로, 같은 조 제5항 중 “무기계약근로자”를 “공무직근로자”로 한다.

제11조 제1항 본문 중 “채용부서는 제9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를 “관리부서는 근로자가 배치된 경우”로 하며, “고창군수”를 “군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채용부서”를 “관리부서”로 한다.

제12조 제3항 본문 중 “채용부서”를 “관리부서”로 한다.

제13조 제3항 (삭제)

제14조 제3항 중 “채용부서”를 “관리부서”로 한다.

제16조(채용 또는 계약종료 등의 통보)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전보 또는 계약종료 등의 통보) 관리부서는 근로자를 부서내에서 전보하거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경우에는 다음달 5일까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인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채용부서”를 “관리부서”로 한다.

제1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채용부서는 무기계약근로자”를 “인사부서는 공무직근로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채용부서”를 “인사부서”로 한다.

제21조 제1호 중 “무기계약 근로자”를 “공무직근로자”로 한다.

제22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중 “채용부서”를 “관리부서”로 한다.

제23조 제1항 중 “근로자의 근무상한 연령은 만 57세”를 “공무직근로자의 근무상한 연령은 만 60세”로 한다.

제29조 제3항 중 “10개월”을 “3개월”로, “통상임금의 10분의 1”을 “기본급의 3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하며, 처분 기간동안 각종 수당을 3분의 1”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평균임금의 3분의 1”을 “기본급의 3분의 2를 감액하여 지급하며, 처분 기간동안 각종 수당을 3분의 2 감액하여”로 한다.

제35조 중 “별표 3”을 “별표 3(징계양정기준), 별표 4(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 별표 5(음주운전 징계기준)”로 한다.

제44조 중 “채용부서”를 “인사부서”로 하고, “무기계약근로자”를 “공무직근로자”로 한다.

제45조 중 “채용부서”를 “관리부서”로 한다.

제46조 제1항 본문 중 “채용부서”를 “관리부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채용부서의 장”을 “관리부서의 장”으로, “자치행정과장”을 각각 “인사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52조 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 등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연장근로를 명할 수 있다.

제52조 제3항 중 “군청은 근로자의 대표”를 “관리부서는 근로자”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근로자가 제2항에서 정한 수당을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그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추징하고 부당 수령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되는 연장·야간·휴일근로를 금지하여야 한다.

1. 1회 적발시 : 적발 시점 이후 3개월간 근무시간외 근무명령 금지
2. 2회 적발시 : 적발 시점 이후 6개월간 근무시간외 근무명령 금지
3. 3회 적발시 : 적발 시점 이후 12개월간 근무시간외 근무명령 금지

제54조 제2항의 단서 조항 중 “근로자의 대표”를 “근로자”로 하고, “사용부”를 “관리부서” 한다.

제59조 중 “채용부서의 장”를 “관리부서의 장”로 한다.

제63조 제1항 및 제2항 중 “채용부서”를 각각 “관리부서”로 한다.

제64조 제1항 중 “채용부서의 장”을 “관리부서의 장”으로 하고, 제2항 중 “채용부서”를 “관리부서”로 한다

제65조 제1항 및 제2항 중 “채용부서의 장”을 각각 “관리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66조 제1항 및 제2항 중 “채용부서의 장”을 각각 “관리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67조 제1항 중 “채용부서의 장”을 “관리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68조 중 제1항, 제2항, 3항을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제68조(유급휴일)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유급 휴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 유급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다.

제70조 제1항 중 “소속부서의 장”을 “관리부서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군청은”을 “관리부서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군청”을 “관리부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군청은”을 “관리부서는”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군청의”를 “관리부서의”로 한다.

제71조를 삭제한다.

제72조 제1항 후단 중 “부서의 장”을 “관리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7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군청은”을 “관리부서는”으로, “사원”을

“근로자”로 하고, 제1항 제2호 “3일”을 “5일”로 한다.

제74조 중 “군청은”을 “관리부서는”으로 한다.

제75조 제3항 중 “군청은”을 “관리부서는”으로 한다.

제76조 제1항 중 “군청은”을 “관리부서는”으로 한다.

제7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채용부서”를 “관리부서”로 한다.

제83조 제1항 중 “채용부서의 장”을 “관리부서의 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채용부서”를 “관리부서”로 한다.

제84조 제1항 및 제3항 중 “군청은”을 각각 “관리부서는”으로, 제1항 “만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를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영유아”로, 제2항 단서조항 신설 “단, 여성근로자는 한 자녀에 대해서 3년 이내로 하며, 1년이상 휴직할 경우 자녀 1인당 1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한다.”

제87조 전단 중 “채용부서”를 “인사부서”로 한다.

제90조 중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를 “군수는 공무직근로자”로 한다.

제91조 중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를 “군수는 공무직근로자”로 한다.

제9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군청은”을 “군수는”으로, “다음”을 “근로자는 다음”으로, “자치행정과장과 협의를”을 “인사부서에 제출”로 하고, 같은조 제2항 중 “군청은”을 “군수는”으로 하고,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으로 한다.

제93조 제1항 전단 중 “고창군수”를 “군수”로 한다.

제94조 제1항 중 “채용부서의 장”을 “인사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95조 제1항 중 “군청은”을 “군수는”으로 한다.

제96조 제1항 및 제2항 중 “군청은”을 각각 “군수는”으로 한다.

제97조 중 “군청은”을 “군수는”으로 한다.

제98조 제2항 중 “군청은”을 “군수는”으로 한다.

제99조 제3항 중 “채용부서의 장”을 “관리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00조 제2항 중 “군청에서”를 “군수가”로 한다.

제101조 제1항 및 제2항 중 “군청은”을 각각 “군수는”으로 한다.

제102조 중 “군청은”을 “군수는”으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20호 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채용 및 관리된 무기계약근로자는 이 규정에 따른 공무직근로자로 본다.

제3조(근무상한연령에 대한 경과조치) 제23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시행당시 2016년 12월 31일 이전 퇴직예정인 공무직근로자의 정년은 57세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고창군 무기계약근로자의 취업관리규정</u></p> <p><u>제1조(목적) 이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창군(본청·의회사무과·직속기관·사업소·읍면)에서 근로하는 무기계약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보수·복무·신분관계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제시함으로써 인력관리의 통일성·효율성을 목적으로 한다.</u></p> <p><u>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무기계약근로자"란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u> <u>2. "채용권자"란 무기계약근로자의 채용·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는 고창군수를 말한다.</u> <u>3. (생략)</u> <u>4. "인사부서"란 근로자의 정수와 총괄 기능 및 현원 관리와 복무를</u> 	<p><u>고창군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u></p> <p><u>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창군(본청·의회사무과·직속기관·사업소·읍면)에서 근로하는 공무직 근로자의 채용, 자격기준·보수·신분관계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u></p> <p><u>제2조(정의) ① -----</u></p> <p><u>1. "공무직근로자"란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u></p> <p><u>2. ----- 공무직근로자 ----- ----- 군수 -----.</u></p> <p><u>3. (현행과 같음)</u></p> <p><u>4. "인사부서"란 근로자의 정원과 현원 관리 및 채용·복무 등을</u></p>

담당하는 자치행정과 인사팀장을 말한다.

5. "예산부서"란 근로자의 보수 등의 예산을 편성 및 운영하는 기획 예산실 예산팀장을 말한다.
6. (생략)
7. "채용부서"란 무기계약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및 복무를 관장하는 본청·의회·소속기관을 말한다.
8. "채용부서의 장"이란 실·과장, 의회사무과장, 소속기관의장을 말한다.

제4조(직종의 구분 등) ① (생략)

1. ~ 6. (생략)
7. 현업종사원: 가로등 보수, 구내식당 종사자, 예찰보조, 안전요원, 주정차단속 등 단순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

② 채용부서는 제1항에 따른 직종을 임의로 달리하여 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없으며 직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인사부서에 직종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을 말한다.

5. -----부서의 팀장-----.
6. (현행과 같음)
7. "관리부서"란 공무직근로자의 사용 및 복무를 관장하는 본청·의회사무과·직속기관·사업소·읍·면을 말한다.
8. "관리부서의 장"이란 실·과장, 의회사무과장, 직속기관의장, 사업소장, 읍·면장을 말한다.

제4조(직종의 구분 등) ① (현행과 같음)

1. ~ 6. (현행과 같음)
7. -----
----, 농기계수리 등 단순업무에 종사하거나, 그 밖에 일일근무시간 중 종일 사무실 근무를 요하지 않는 인력

② 관리부서-----

-----.

제5조(사용기준) 무기계약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업무분야는 연중 상시 발생하고 장기간 지속되거나 지속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사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 5. (생략)

제6조(정원관리) ① 인사부서는 근로자의 정수를 관리하여야 하며, 본청 및 소속 기관에 두는 무기계약 근로자의 직종별 정수는 별표 1과 같다.

② 인사부서는 필요한 경우 정수를 변경하고 변경사항을 예산부서 및 채용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자격 기준) 채용부서는 제8조 및 무기계약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각 관련 법령에서 정한 채용결격 사유가 없는 자로 한정하여 별표 2의 채용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제8조(근로자 확정 · 통보) ① 인사부서는 기간제근로자 중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무기계약 전환기준을 충족한 근로자에 대하여 무기계약근로자로 확정하여야 한다.

② 인사부서는 무기계약근로자를

제5조(사용기준) 공무직근로자-----

-----.

1. ~ 5. (현행과 같음)

제6조(정원관리) ① -----
-- 정원을 -----
----- 공무직근로자의 직종별 정원은 -----.

② ----- 정원을 -----
----- 관리부서-----.

제7조(자격 기준) 인사부서는 제8조 및 공무직근로자-----

-----.

제8조(근로자 확정 · 통보) ① -----

공무직근로자로의 -----
----- 전환 평가 및 인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공무직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다.

② ----- 공무직근로자로

확정한 경우 그 명단을 예산부서·채용부서·급여 담당부서 및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채용) ① 채용부서는 인사부서에서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로 통보한 근로자를 무기계약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인사부서와 협의하여 신규채용절차에 따라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청원경찰 및 청원산림보호직원,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 따라 채용부서의 요구에 따라서 인사부서에서 채용한다.

② 채용부서는 근로자의 신규채용 당시 신원조사 실시여부를 확인하여 신원조사를 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자로부터 서류를 제출받아 신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채용할 때에 갖추어야 할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6. (생략)

③ 인사부서는 제1항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 채용계획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채용목적·인원 등의 적정 여부와 인력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채용부

예산부서·관리부서·급여 -----
-----.

제9조(채용) ① 인사부서에서는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신규채용절차에 따라 채용해야 하며, 다만 청원경찰 및 청원산림보호직원,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관리부서의 요구에 따라서 인사부서에서 채용한다.

② 인사부서-----

-----.

1. ~ 6. (현행과 같음)

③ ----- 공무직근로자 -----

관리부서-----.

서에 통보한다.

④ 상시 ·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는 전환평가 및 무기계약인사위원회 심의 · 의결을 거쳐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한다.

⑤ 상시 · 지속적 업무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에 무기계약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근로계약) ① 채용부서는 제9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표준근로 계약서를 참조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근로계약서의 "갑"은 고창군수로 한다. 다만, 청원경찰 및 산림보호 직원의 경우에는 인사부서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체결 방식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채용부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근로자와 각각 1부씩 보관하고 제9조 제2항의 서류 사본 1부와 근로계약서 1부를 인사부서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12조(직종 변경) ① · ② (생 략)
③ 인사부서는 근로자에 대하여 직종을 변경한 경우 예산부서 · 급여담

④ -----
----- 공무직인사위원회
----- 공무직근로자-----
-----.

⑤ -----
----- 공무직근로자-----
-----.

제11조(근로계약) ① 관리부서는 근로자가 배치된 경우 -----

-----.

----- 군수 --. -----

-----.

② 관리부서-----

-----.

제12조(직종 변경) ① · ②(현행과 같음)
③ -----

<p>당 부서 · <u>채용부서</u> 및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④ (생 략)</p> <p>제13조(전보 등) ① · ② (생 략)</p> <p><u>③ 근로자를 전보한 경우 전출부서는 인사 관계서류 일체를 전보일부터 7일 이내에 채용부서로 송부하여야 한다.</u></p> <p>제14조(인사기록카드의 작성 등) ① · ② (생 략)</p> <p>③ <u>채용부서의 장은 근로자의 근로 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신분증 등을 즉시 반납 받아야 하며 인사부서로 송부하여야 한다.</u></p> <p>제16조(<u>채용 또는 계약종료 등의 통보</u>) 채용부서는 근로자를 채용 · 전보하거나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경우에는 다음달 5일까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자치행정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제18조(퇴직 및 퇴직일) ① <u>채용부서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근로자를 퇴직시킬 수 있다.</u></p> <p>1. ~ 5. (생 략)</p> <p>② (생 략)</p>	<p>————— —<u>관리부서</u>————— —————.</p> <p>④ (현행과 같음)</p> <p>제13조(전보 등) ① · ②(현행과 같음)</p> <p><<u>삭제</u>></p> <p>제14조(인사기록카드의 작성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u>관리부서————— ————— —————.</u></p> <p>제16조(<u>전보 또는 계약종료 등의 통보</u>) 관리부서는 근로자를 부서내에서 전보하거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경우에는 다음달 5일까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인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제18조(퇴직 및 퇴직일) ① <u>관리부서————— —————.</u></p> <p>1. ~ 5.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	---

제19조(근로계약의 해지 등) ① 채용부서는 무기계약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 5. (생략)

② 채용부서는 행정수요 감소로 인한 업무량의 축소, 직제 개편 등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의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해고예고의 예외) 다음 각 호의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한다.

1. 무기계약 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 5. (생략)

제22조(계약해지 등의 통보) ① 채용부서의 장은 계약해지(징계해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일 30일 전에 서면으로 그 사유 및 날짜를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채용부서는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해지 30일 전에 제1항에 따른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

제19조(근로계약의 해지 등) ① 인사부서는 공무직근로자-----

-----.

1. ~ 5. (현행과 같음)

② 인사부서-----

-----.

제21조(해고예고의 예외) -----

-.

1. 공무직근로자-----

2. ~ 5. (현행과 같음)

제22조(계약해지 등의 통보) ① 관리부서-----

-----.

② 관리부서-----

-----.

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3조(근무상한연령) ① 근로자의 근무상한연령은 만 57세로 한다. 다만, 청원경찰의 경우 「청원경찰법」, 청원산림보호직원의 경우에는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정년을 준용한다.

② (생 략)

제29조(징계의 효력) ① · ② (생 략)

③ 감봉은 1개월 이상 10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동안 통상 임금의 10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④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동안 평균 임금의 3분의 1을 지급한다.

⑤ · ⑥ (생 략)

제35조(징계사유 심의)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입증 자료의 적부 및 징계심의 대상자의 소행과 평소 근무성적 · 공적 · 비위 · 동기 · 반성태도의 유무 등의 정상 참작과 징계요구권자의 의견을 종

제23조(근무상한연령) ① 공무직근로자의 근무상한 연령은 만 60세로 한다. ----- .

② (현행과 같음)

제29조(징계의 효력)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3개월 -----
----- 기본급의 3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하며, 처분기간동안 각종 수당을 3분의 1 ----- .

④ -----
----- 기본급의 3분의 2를 감액하여 지급하며, 처분기간동안 각종 수당을 3분의 2 감액하여 ----- .

⑤ · ⑥ (현행과 같음)

제35조(징계사유 심의) -----

----- 별표 3(징계양정

합적으로 검토하여 별표 3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양정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제44조(공무원 징계와 관련된 경우의 처리) 채용부서는 동일한 징계사유로 공무원이 징계에 회부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징계처분에 준하여 해당 무기계약근로자를 징계하여야 한다.

제45조(손해배상) 채용부서는 근로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해당 근로자가 그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6조(근무성적 평정) ① 채용부서는 반기마다 반기말일을 기준으로 연 2회(1월~6월, 7월~12월) 근로자의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고 평정자료를 인사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채용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렇지 아니하다.

② (생 략)

③ 근무성적 평정의 평정자는 해당 업무의 담당으로 하고, 확인자는 채용부서의장으로 하며, 평정결과 다음달 5일까지 자치행정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규정), 별표 4(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 별표 5(음주운전 징계기준)-----.

제44조(공무원 징계와 관련된 경우의 처리) ----- 인사부서-----

--- 공무직근로자-----
---.

제45조(손해배상) 관리부서-----

-----.

제46조(근무성적 평정) ① 관리부서-----

-----.

-----.

② (현행과 같음)

③ ----- 관리부서
의장-----
인사부서의장-----
-.

④ (생 략)

제52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① 연장근로는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자의 동의 하에 실시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② (생 략)

③ 군청은 근로자의 대표와 서면 합의하여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대신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신 설>

④ (현행과 같음)

제52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① -
-----.
-----.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 등 업무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
의 없이 연장근로를 명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③ 관리부서는 근로자-----

-----.

④ 근로자가 제2항에서 정한 수당을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그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추징하고 부당 수령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되는 연장·야간·휴일근로를 금지하여야 한다.

1. 1회 적발시 : 적발 시점 이후 3개월간 근무시간외 근무명령 금지
2. 2회 적발시 : 적발 시점 이후 6개월간 근무시간외 근무명령 금지
3. 3회 적발시 : 적발 시점 이후 12개월간 근무시간외 근무명령 금지

제54조(야간 및 휴일근로의 제한) ①
(생 략)

② 임산부에 대하여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를 시키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근로자의 대표와 성실히 협의한 후 사용부의 장의 인가를 받아 야간 및 휴일근로를 실시할 수 있다.

1. ~ 3. (생 략)

제59조(직장이탈금지) 근로자는 채용부서의 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해서는 안된다.

제63조(근무상황) ① 채용부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근로자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하고 근무태도 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채용부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근로자의 연장근무와 휴일근무에 대하여 시간외근로기록부를 비치하고,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64조(출장 등) ① 채용부서의 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로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채용부서는 제1항에 따른 출장에

제54조(야간 및 휴일근로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_____
_____.

근로자-----관리부서
-----.

1. ~ 3. (현행과 같음)

제59조(직장이탈금지) ----- 관리부서의 장-----
-----.

제63조(근무상황) ① 관리부서-----

-----.

② 관리부서-----

-----.

제64조(출장 등) ① 관리부서의 장-----

-----.

② 관리부서-----

소요되는 비용은 공무원여비규정 등이 정한 범위에서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65조(결근) ① 근로자가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할 때에는 근로시간 전에 결근사유 및 결근일 수를 증명하는 사유를 첨부하여 채용부서의 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채용부서의 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결근할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제66조(지각, 조퇴, 외출) ① 근로자의 질병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조퇴하거나 외출 하려는 때에는 채용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채용부서의 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단조퇴, 무단외출로 간주한다.

제67조(공민권 그 밖의 권리행사) ①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을 행사하거나 공적 직무를 집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채용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다.

② (생 략)

제68조(유급휴일) ① 1주 동안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일요일을 유급 주휴일로 부여한

 -----.

제65조(결근) ① -----

 ----- 관리부서의 장-----
 -----.

② 관리부서의 장-----

 -----.

제66조(지각, 조퇴, 외출) ① -----

 ----- 관리부
서의 장-----.
 ② 관리부서의 장-----

 -----.

제67조(공민권 그 밖의 권리행사) ① -----

 ----- 관리부서
의 장-----
 -----.

② (현행과 같음)

제68조(유급휴일)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 유급휴일을 다른

다. 다만,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부서별로 유급 주휴일을 다른 요일로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③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제1항의 유급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다.

제70조(연차휴가의 사용) ①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 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한 적어도 3일 전에 소속부서의 장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군청은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으로 인해 업무에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③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은 군청의 귀책사유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생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소멸한다.

④ 군청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할 수 있다. 군청의 사용촉진조치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금전으로 보상 하지 아니한다.

날로 대체할 수 있다.

제70조(연차휴가의 사용) ① -----

--- 관리부서의 장-----
-----.

② 관리부서는 -----

-----.

③ ----- 관리부서-----

-----.

④ 관리부서는 -----

관리부서의 -----
-----.

제71조(연차유급휴가의 대체) ① · ②

(생 략)

제72조(하계휴가) ① 근로자는 정규 직공무원이 실시하는 기간 중에 하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휴가개시일 3일 전에 부서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생 략)

제73조(경조사 휴가) ① 군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사원의 신청에 따라 유급의 경조사휴가를 부여한다.

1. (생 략)

2. 배우자의 출산: 3일

3. ~ 5. (생 략)

② (생 략)

제74조(생리휴가) 군청은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월 1일의 무급 생리휴가를 부여한다.

제75조(임산부의 보호) ① · ② (생 략)

③ 군청은 근로자가 산전·후 휴가 급여를 신청할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산전·후 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④ · ⑤ (생 략)

<삭제>

제72조(하계휴가) ① -----
-----.
----- 관리부서의 장-----
-----.

② (현행과 같음)

제73조(경조사 휴가) ① 관리부서는 -

- 근로자-----
-----.

1. (현행과 같음)

2. 배우자의 출산: 5일

3.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74조(생리휴가) 관리부서는 -----

-----.

제75조(임산부의 보호)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관리부서는 -----

-----.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76조(병가) ① 군청은 근로자가 업무외 질병·부상 등으로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간 6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병가기간의 급여는 공무원과 동일한 방식으로 지급한다.

② (생 략)

제77조(공가) 채용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허가하여야 하며, 공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1. ~ 5. (생 략)

제83조(휴직) ① 채용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 3. (생 략)

4. 자녀(휴직신청당시 3세 미만인 자녀에 한정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5. (생 략)

② 채용부서는 근로자에 대한 휴직 또는 복직을 명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인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

제76조(병가) ① 관리부서는 -----

-----.

② (현행과 같음)

제77조(공가) 관리부서의 장-----

---.

1. ~ 5. (현행과 같음)

제83조(휴직) ① 관리부서의 장-----

-----.

1. ~ 3. (현행과 같음)

<삭제>

5. (현행과 같음)

② 관리부서-----

-----.

다.

제84조(육아휴직) ① 군청은 근로자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졸업전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 한다.

1. ~ 3. (생략)

②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단서신설>

③ 군청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고용보험법령이 정하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제87조(휴직자의 의무) 휴직자는 휴직 중에 채용부서의 장의 허가 없이 타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이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밀누설·음주운전·교통사고·도주 등 제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때에는 해고 등 중징계 할 수 있다.

제90조(사회보험의 가입) 채용권자는

제84조(육아휴직) ① 관리부서는 --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영유아-----

---.---,-----

-----.

1. ~ 3. (현행과 같음)

② ----- 단,
여성근로자는 자녀 1명에 대해서 3년 이내로 하며, 1년 이상 휴직할 경우 자녀 1인당 1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한다.

③ 관리부서는 -----

-----.

제87조(휴직자의 의무) -----

---- 인사부서-----

-----.

제90조(사회보험의 가입) 군수는 공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하여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91조(공제)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의 보수를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금품을 공제한다.

1. ~ 3. (생 략)

제92조(퇴직급여의 수준 등) ① 군청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 할 경우에는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자치행정과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② 군청은 제1항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대신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에 따른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제93조(중간정산) ① 고창군수는 주택구입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

무직근로자-----

-----.

제91조(공제) 군수는 공무직근로자-----
-----.

1. ~ 3. (현행과 같음)

제92조(퇴직급여의 수준 등) ① 군수는 -----

----- 근로자는 다음 -----
인사부서에 제출 -----
----.

1. ~ 4.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제93조(중간정산) ① 군수-----

-----.

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② (생 략)

제94조(직무교육) ① 채용부서의 장은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무교육을 시킬 수 있으며 근로자는 교육과정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제95조(성희롱의 예방) ① 군청은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한 근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1년에 1회 이상 성희롱 관련 법령의 요지, 성희롱 예방을 위한 방침, 성희롱 피해자의 권리구제 방법과 가해자의 조치 등을 내용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한다.

② · ③ (생 략)

제96조(건강진단) ① 군청은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유지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다. 단, 사무직은 매 2년에 1회 실시한다.

② 군청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우 특수·수시·임시 건강진단 등을 실시한

-----.

② (현행과 같음)

제94조(직무교육) ① 인사부서의 장-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95조(성희롱의 예방) ① 군수는 ---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96조(건강진단) ① 군수는 ---

-.

② 군수는 -----

-----.

다.

제97조(안전, 보건교육) ① (생 략)
 ② 군청은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내용 및 시간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8조(안전보건) ① (생 략)

② 군청은 근로자의 업무 수행상 안전관리와 보건위생을 위하여 최선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대하여는 동 규칙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구체적 내용은 별도의 안전보건 관리규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99조(보고, 위생대책) ① · ② (생 략)

③ 채용부서의 장은 근로자의 보건 위생을 위하여 방역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는 이에 순응하여야 한다.

④ (생 략)

제100조(재해보상) ① (생 략)

② 「산업재해보상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청에서 보상한다.

제97조(안전, 보건교육) ② (현행과 같음)
 ③ 군수는 -----

 -----.

제98조(안전보건) ②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

 -----.

제99조(보고, 위생대책) ③ (현행과 같음)

③ 관리부서의 장-----

 -----.

④ (현행과 같음)

제100조(재해보상) ② (현행과 같음)

② -----

 -----.
군수가 -----.

제101조(근로재해 보험 등)① 군청은 업무외 재해에 대해서는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군청은 재해보상시에 보상을 받을 자가 동일한 사유로 근로재해보험 및 단체상해보험, 「민법」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액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가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102조(업무외 재해) 군청은 업무외 재해에 대해서는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01조(근로재해 보험 등)① 군수는 -----.
-----.

② 군수는 -----

-----.

제102조(업무외 재해) 군수는 -----

-----.

[별표 1]

공무직 근로자 정원표 (제6조관련)

기관별	직종	계	청원경찰				청원 보호 직원	환경 미화 원	도로 보수 원	단순노무원				행정 점포 보조 원	현업종사원					
			소계	경비 요원	하천 오염 감시	소계				시설정비 유지보리 인부	환경 시설정비 등록인부	단순 점포 조무 인부	소계		가로 등 보수 요원	수영 강사 안전 요원	청소 년도사	농기 계수 리원		
합계		214	40	40	0	1	58	10	49	28	16	5	41	15	10	0	1	2	2	
기획예산실		1												1						
주민복지과		10	1	1					1	1				7	1	1				
자치행정과		6	4	4										2						
민생경제과		0																		
종합민원과		8												8						
문화관광과		12	6	6			0		4	4		0		1	1	1				
재무과		8	2	2					3	3				3						
재난안전과		0																		
농업진흥과		1												1						
건설도시과		11						10						1	1					
산림공원과		15	3	3		1	5		5	5					1	1				
해양수산과		1							1	1										
축산과		4	1	1					3		3									
환경위생과		1												1						
의회사무과		4	1	1										3						
보건소		10	1	1					1	1				8						
농업기술센터		12							6	1	5			4	(+2)	2			2	
생활권보전사업		0																		
체육청소년사업소		16	8	8					5	4		1		3			1	2		
상하수도사업소		8	4	4					4			4								
환경시설사업소		22	1	1			13		8		8									
문화시설사업소		12	2	2					6	6				1	(△2)	1				
고창읍		26					26													
고수면		1							1											
아산면		1							1											
무장면		3	1	1					1								1	1		
공음면		3	1	1					1								1	1		
상하면		4	1	1					2								1	1		
해리면		1							1											
성송면		3	1	1					1		1	1								
대산면		3	1	1					1		1	1								
심원면		3	1	1					1							1	1			
홍덕면		1							1											
성내면		1							1											
신림면		1							1											
부안면		1							1											

【별표 2】

**공무직 근로자의 채용
자격기준**

(제7조 관련)

직 명	자 격 기 준
환경미화원	<p>1. 1종 보통 또는 대형면허증을 소지한 자로서 공고일 기준 1년 전부터</p> <p>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고창군에 있는 자로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세 이상 출생 자 다만,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군복무가 면제된 자 -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도로보수원	<p>1. 단순노무원 또는 기간제근로자중 2년이상 경력을 가진자로서</p> <p>1종 보통 또는 대형면허증 소지자</p>
단순노무· 현업종사원	<p>1. 공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고창군에 있는 자로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세 이상 출생 자 다만,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군복무가 면제된 자 -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p>단, 농기계수리원의 경우 농기계정비기능사 및 기계관련 동등이상 자격증 소지자 또는 농기계수리 관련업체 종사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자</p>
행정정보조원	<p>1. 기간제근로자중 2년이상 경력을 가진자로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워드프로세서 3급·컴퓨터활용능력 3급 이상 자격을 가진 자 - 워드프로세서, 엑셀, 파워포인트 등 전산업무가 가능한 자 및 회계업무처리가 가능한 자
가로등보수	<p>1. 전기기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이상 자격을 소지한 자</p>
수영강사· 안전요원	<p>1. 생활체조 지도사 3급(수영분야) 이상 자격증소지자</p> <p>2. 인명구조원 자격증 소지자</p>
청소년지도사	<p>1. 청소년지도사 3급이상 자격증 소지한 자로서 전산업무가 가능한 자</p>

【별표 3】

징계양정기준

(제35조 관련)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악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악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 정도가 악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나.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다. 기타		해고	해고~정직	정직	감봉 감봉~견책 견책~경고
2. 복종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나. 기타		해고	해고~정직	정직	감봉~견책 견책~경고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가.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 나. 무단결근 다. 기타		해고	해고~정직	정직	감봉~견책 견책~경고 견책~경고
4. 친절·공정의무 위반	해고	정직	감봉	견책~경고	
5. 비밀 엄수 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유출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다.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 라. 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 및 관리 소홀 등 마. 그 밖의 보안관계 법령 위반	해고	해고~정직	감봉	견책~경고 감봉~견책 감봉~견책 견책~경고 견책~경고	

6. 청렴의무 위반	[별표 4]와 같음			
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가. 성폭력(업무상 위력 등),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해고	해고	정직	감봉~견책
나. 그 밖의 성폭력	해고	해고	정직	감봉~견책
다. 성희롱	해고	해고~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라. 성매매	해고	해고~정직	정직~감봉	견책~경고
마. 음주운전	[별표 5]와 같음			
바. 기타	해고	정직	감봉	견책~경고
8.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	해고	정직	감봉	견책~경고
9. 집단행위 금지 위반	해고	해고~정직	정직~감봉	견책~경고
<p>※ 비고</p> <p>1) 제7호 가목에서 "업무상 위력 등"이란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한 경우를 말한다.</p> <p>4) 제7호 나목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p> <p>5) 제7호 라목에서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성매매를 말한다</p>				

[별표 4]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

(제35조 관련)

구 분	의례적인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거나 제공한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거나 제공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거나 제공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징계요구 (처리기준)	징계기준	징계요구 (처리기준)	징계기준	징계요구 (처리기준)	징계기준
100 만원 미만	수 동	경장계·중장계	정직 ~ 감봉	중장계	해고 ~ 정직	해고 ~ 정직
	능 동	중장계	해고 ~ 정직		해고 ~ 정직	중장계
100만원 이상		중장계	해고 ~ 정직		해고	해고

* 참고
“금품이나 향응 등”은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을 말함

[별표 5]

음주운전 징계기준

(제35조 관련)

유형별	징계요구 (처리기준)	징계기준	비고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 0.1% 미만인 경우	경· 중징계	감봉~견책
	혈중알코올 농도 0.1% 이상인 경우 또는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		정직~감봉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정직~감봉
	음주운전으로 경상해 또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정직~감봉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고~정직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고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해고~정직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해고~정직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고~정직
	음주운전으로 중상해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해고~정직
운전업무 관련 공무직이 음주 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중징계	해고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정직

【별지 제1호서식】

공무직근로자 채용계획서

(제9조 관련)

기관 및 부서명	채용인원	담당업무	채용기간
채용목적 및 필요성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자격조건 (학력 및 전공분야, 자격증 등)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보수지급기준 (단가 등)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계약금액 (월보수액)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소요예산 (예산구분 및 과목)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채용방법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기타 필요사항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작성자 직:

성명: (인)

확인자 직:

성명: (인)

【별지 제2호서식】

공무직근로자 채용승인서				
직 종 별	<input type="checkbox"/> 청원경찰() · <input type="checkbox"/> 청원산림보호직원() · <input type="checkbox"/> 환경미화원() <input type="checkbox"/> 도로보수원() · <input type="checkbox"/> 단순노무원() · 기타()			
채 용 목 적				
요 구 인 원			승 인 인 원	
채 용 일 자			채 용 기 간	
소 요 예 산	구분	예산과목	소요예산	산출기초
	급여			
	기타			
승 인 조 건				
기 타 사 항				
고창군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무직 근로자 채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고 창 군 수 헌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공무직근로자 채용 불승인 통보서

○○○에서 제출한 공무직근로자 채용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다음 사유로 불승인되었기에 고창군 공무직근로자 관리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통보합니다.

- 다 음 -

요구일자	건 명	내 용	사 유

년 월 일

고 창 군 수 인

귀하

【별지 제4호서식】

표준이력서 양식

성명		한글 : 한자 :		주민등록번호 ~		사진 (4x5)				
생년월일		서기 년 월 일생 (만 세)								
주소										
호주명 및 관계		의								
전화번호	자택 :			E-Mail 주소						
	핸드폰 :									
학력사항	졸업년도		학교명		전공					
	년	월								
					대학	과				
경력사항	회사명		재직기간		부서 및 업무내용		퇴직사유			
			~							
			~							
자격면허	취득년월일		종류		시행청					
병역신체	병역구분		필·미필·면제·보충역		복무기간		~ (개월)			
	면제사유				군별			병과		
	신장	cm	체중	kg	시력	좌() 우()	신체건강상 특기사항			
가족사항	관계	성명		생년월일		최종학력		근무지	직위	동거여부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인)								

【별지 제5호서식】

표준근로계약서(안)

(제11조 관련)

○○○○의 장(이하 “갑”이라 함)과 ○○○(이하 “을”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1. 근로계약기간 : 20 년 월 일부터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2.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 근무장소(부서) :

○ 업 무 내 용 :

○ 갑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을의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또는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

3. 근로시간 및 휴게

○ 근로시간 : 09시 00분부터 18시 00분까지

(휴게시간 : 12시 00분부터 13시 00분까지)

*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갑은 필요한 경우에는 을과 합의하여 1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근로일 및 휴일

○ 근로일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무급 휴무일)과 휴일은 근로일에서 제외한다.

○ 휴 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휴일로 하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5. 휴 가

○ 연차 유급휴가 및 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보 수

- 보수는 봉급, 복리후생비, 법정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등으로 구성하며, 고창군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제88조에 따른다.
- 보수는 매월 20일(초일부터 말일까지 산정)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 보수는 “을”의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7.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고창군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년 월 일

(갑) 주 소 :

기 관 명 : (전화 :)
사용권자 :
사용부서의장 : (서명 또는 인)

(을)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전화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6호서식】

재정보증서

(제17조제1항 관련)

주 소 :

소 속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담당업무 :

상기자가 재직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귀 기관에 손실을 발생시켜 귀 기관에서 이의 변상을 요구하였으나 상기자가 변상하지 못할 경우에는 본인 등이 연 대하여 변상하겠음을 보증합니다.

20 년 월 일

현주소 :

직 업 :

관 계 :

보증인 :

(인) 주민등록번호 :

현주소 :

직 업 :

관 계 :

보증인 :

(인) 주민등록번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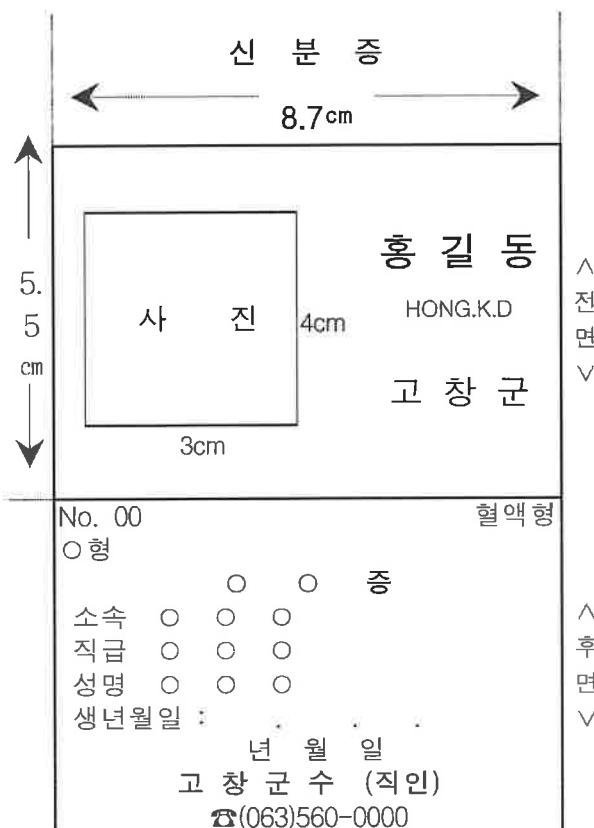
귀 하

210mm×297mm(일반용지60g/m²(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예시)

(제14조제2항 관련)



※ 비고

1. 기재사항

- 사진 : 3cm × 4cm
- 성명 : ○ ○ ○
- No. : 신분증 발행번호
- 혈액형 : ○형
- 증명 : 행정보조월증, 비서증 등으로 표시
- 소속 : 노동부 산업안전국, 서울지방노동청 등으로 기재
- 직급 :
- 주민등록번호
- 기관의 장 및 직인 날인
- 철인

2. 지질은 인쇄용지 190g/m²

3. 색상은 공무원증 색상에 따른다

【별지 제8호서식】

재 직 증 명 서
 (제15조 관련)

인적사항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 번 호	-
	주소				
	본적	기재 생략			
재직사항	소속				
	직명 및 등급				
	기간				
용도					

【별지 제9호서식】

경 력 증 명 서

(제15조 관련)

인적사항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 번 호			
경력사항	주 소					
	근무기간 부터 까지		직명 및 등급		근무부서	
근무년한			최종 직명 및 등급			
퇴직사유						
상벌사항	포상			징계		
	년월일	종류	시행청	년월일	종류	시행청
용도						

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고 창 군 수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

【별지 제10호서식】

공무직근로자 임면 보고

(제16조 관련)

기관명 :

성 명	직 종 명	구 분 (채용, 전보, 해지, 퇴직 등)	채용 등 년월일	담당업무	사 유

210mm×297mm(일반용지60g/m²)

※ 비고

1. 사유는 구분으로 확인이 곤란한 경우 기재함

【별지 제11호서식】

(앞 쪽)

○○○ 근무성적 평정표

(제46조제2항 관련)

※ 평정대상자는 앞쪽만 기재하고, 뒤쪽은 평정자 및 확인자가 기재합니다.

○ 평정대상기간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 평정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담당직무내용

소 속	직 종	성 명	생년월일	최초임용일	담당업무

《직무내용 : 평정대상기간에 담당한 업무의 내용과 범위를 기재》

1. 추진실적

단위업무명	추진업무내용	업무비율	최종결재권자	단위업무평가

※ 업무비율은 당해업무가 담당업무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백분율로 기재합니다.

※ 단위업무평가는 평정자가 추진실적을 우수.보통.미흡으로 구분.평가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

(뒤쪽)

2. 근무성적평정

* 업무목표와 추진실적, 자기기술서, 평소관찰 결과 등을 토대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다음과 같이 평정점을 부여합니다.

- 각 평정요소별로 타월-우수-보통-미흡-불량의 5단계로 평정함. (단계별 평정점과의 차이는 균등하여야 함)

① 근무 실적 (60%)	평정요소		계(60) 대디어무의 질과량(20)	목표달성을 (20)	창의성 (10)	노력도 (10)
	평정점	평점자 (30%)				
	확인자 (30%)					
합 계			점			

② 직무 수행 능력 (30%)	평정요소		전문지식 (10)	이해,판단력 (10)	업무추진력 (10)	
	평정점	평점자 (15%)				
	확인자 (15%)					
합 계			점			

③ 직무 수행 태도 (10%)	평정요소		책임성 (4)	대민친절성 (3)	협조성 (3)	
	평정점	평점자 (5%)				
	확인자 (5%)					
합 계			점			

종합평정점 (①②③의 총평점 합계)	점
---------------------	---

3. 기록란

* 평소 관찰한 사실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하며, 확인자가 직무수행태도, 직무수행능력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4. 종합평정의견

평정자 견	소속 :	직위 :	성명 :	(서명)
확인자 견	소속 :	직위 :	성명 :	(서명)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

【별지 제12호서식】

육아휴직신청서

신청자 인적사항	성명		소속		생년월일
영유아 성명					
생년월일					
육아휴직 개시일					
육아휴직 종정일					
기타	당해 자녀의 출생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별첨				

「고창군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제84조제1항에 의거 위와 같이 육아휴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귀하

【별지 제13호서식】

징계의결요구서

인 적 사 항	①성명	한글		②소속		③직종	
		한자		④주민번호		⑤재직기간	
	⑥주 소						
⑦징계 사유							
⑧징계 의결요 구권자 의의견							
위와 같이 징계의결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징계의결요구권자							<input type="checkbox"/>
징계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14호서식】

확인서

	①소속	②직종		③성명		
	1. 인적사항	(현재) (협의당시)	(현재) (협의당시)		(한글) (한자)	
①금품 및 향응수수 관계 (<input type="checkbox"/> 해당됨,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②공금의 횡령·유용 관계 (<input type="checkbox"/> 해당됨,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③중점정화대상 비위관계 (<input type="checkbox"/> 해당됨,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2. 비위유형	①공적사항 포상일자 포상종류 시행청		②징계사항 일자 종류 발령청			
	③성실·능동적 업무처리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한 비위 해당여부 (<input type="checkbox"/> 해당됨,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3. 감경대상 공적유무 및 감경 대상비위 해당여부						
4. 혐의자의 평소소행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주의·경고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5. 기타	*기타 정상참작사유 기재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지 아니함을 확인합니다.						
작성책임자(소속 및 직위) 징계의결요구권자(직위)		(직급)	(성명)	(실인) (인)		

【별지 제15호서식】

출석통지서

인적사항	① 성명	한글		② 소속	
		한자		③ 직위(급)	
	④ 주소				
⑤ 출석이유					
⑥ 출석일시	년 월 일 시 분				
⑦ 출석장소					
유의사항	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할 것. 2.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할 것.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 처리 한다.				
「고창군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인사위원회위원장 (직인)					
귀하					

----- 절취선 -----

진술권포기서

인적사항	① 성명	한글		② 소속	
		한자		③ 직위(급)	
	④ 주소				
본인은 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16호서식】

서 면 진 술 서

소 속		직위(급)			
성 명		제출기일	년	월	일
사 건 명					
불 참 사 유					

(진술 내용)

「고창군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서면으로 진술
진술하며 만약 위 진술내용이 사실과 상이한 경우에는 여하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인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17호서식】

징 계 의 결 서

인 적 사 항	소 속	직 급	성 명
의 결 주 문			
이 유			
	년	월	일
인사위원회			
		위 원 장	(인)
		위 원	(인)
		간 사	(인)

* 징계이유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규정을 기재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징계처분사유설명서

① 소 속	② 직 위(급)	③ 성 명	비 고
④ 주 문			
⑤ 이 유	별첨 징계의결서 사본과 같음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처분권자 (처분제청권자)

(직인)

귀 하

참 고 : 이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에는 「고창군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제33조에 의하여
이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20호서식】

시간외근로기록부

(제63조제2항 관련)

연번 :
보서명 : (.....)

직명 및 등급	성명	구분	근무시간	시간외근무사항		비고
				하여야 할 일(구체적으로)	처리시한	
		: 부터 : 까지			월 일	
		: 부터 : 까지			월 일	
		: 부터 : 까지			월 일	
		: 부터 : 까지			월 일	
		: 부터 : 까지			월 일	
		: 부터 : 까지			월 일	

297mm×210mm(일반용지 60g/m²)

2016. 10. 24. (월)

고창군 고시 제2016 - 71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 따라
건물 등에 새로이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8. 5.

고 창 군 수

○ 도로명주소 고시대상 :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4길 1외 3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도 열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종합민원과(☎560-2415)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 고창군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전면시행

- 도로명주소는 2014. 1. 1. 부터 공법관계는 물론 우리의 모든 생활주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순번	지번	도로명주소
1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교촌리 477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월곡4길 1
2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신월리 36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율계신월길 134
3	전라북도 고창군 아산면 계산리 403-15	전라북도 고창군 아산면 인천강변로 330
4	전라북도 고창군 신림면 송용리 106-3	전라북도 고창군 신림면 왕림로 328-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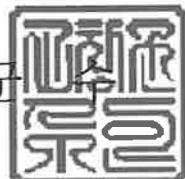
고창군 고시 제2016-73호

재해위험저수지 지정해제·고시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예방에 관한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재해위험저수지를 아래와 같이 지정해제·고시 합니다.

2016. 8. 10.

고 창 군



1.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해제 현황

1. 명칭	2. 위치		3. 규모			4. 저수지 관리자	비고
	읍면	리	저수량 (천 m ³)	길이 (L)	높이 (H)		
계	13개소						
양산제	고수	두평	2.0	56	7.3	고창군수	
심성제	아산	성산	26.04	265	2.8	고창군수	
와룡제	아산	목동	19.32	104	2.9	고창군수	
금척제	아산	하갑	11.3	116	3.8	고창군수	
석동제	무장	신촌	17.0	80	5	고창군수	
정동제	무장	덕립	16.3	160	4	고창군수	
송현제	무장	송현	18.2	120	6	고창군수	
송림제	상하	송곡	19.9	61	6	고창군수	
낙양제	성송	낙양	6.9	70	5	고창군수	
율지제	대산	춘산	11.2	105	5	고창군수	
남성제	신림	도림	4.725	101	3.1	고창군수	
내동제	신림	도림	30.24	170	4.8	고창군수	
도산제	신림	도림	7.088	111	4.3	고창군수	

2. 해제사유 : 재해위험저수지의 보수·보강사업 완료로, 위험 저수지의 지정사유가 없어짐에 따라 재해위험 저수지 지정해제
3. 재해위험저수지 관리기관 : 전라북도 고창군청(건설도시과)
4. 재해위험저수지 지정해제일 : 2016. 8. 10.
5. 문 의 처 : 고창군청 건설도시과(063-560-2555)

고창군 고시 제2016-72호

고창 군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고창군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고창군청 건설도시과(☎063-560-256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고 창 군 수

2016년 08월 12일

1. 실시계획인가 내용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 시행지	규모 또는 면적(m ²)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착공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비고
종 류	명 칭					
군계획시설 (자동차 정류장)	고창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고창읍 읍내리 633-2번지 일원	3,713m ²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고창군수	실시계획 인가일 ~ 2016.12.31	

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조서(변경) : 따로 붙임

3.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4. 관계도서 : 계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조서

공사명 : 고창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연번	위치		지번 (당초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 고
	군	면·리			공부상 면적	편입면 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명세	
합 계					9,391	3,713						
1	고창	고창읍읍 내리	633-2	도	255	6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2	고창	고창읍읍 내리	633-3	도	46	12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3	고창	고창읍읍 내리	634-4	대	589	9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4	고창	고창읍읍 내리	634-10 (634-1)	대	111	69	김현*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	고창군 산림조합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225	근저 당권	
5	고창	고창읍읍 내리	634-8	대	149	43	김경*	서울 구로구 고척동 ***				
6	고창	고창읍읍 내리	636-8	대	106	106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7	고창	고창읍읍 내리	636-7	도	192	164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8	고창	고창읍읍 내리	636-9	대	225	225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9	고창	고창읍읍 내리	636-10	대	350	350	김동*	고창군 고창읍 보릿골 로 ***	고창농업 협동조합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636-1	근저 당권	
10	고창	고창읍읍 내리	863-63	도	3	3	건설부	건설부				
11	고창	고창읍읍 내리	863-11	대	56	56	김복*	고창읍 읍내리 ***				
12	고창	고창읍읍 내리	863-64	대	136	136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13	고창	고창읍읍 내리	863-62	대	86	86	김복*	고창읍 읍내리 ***				
14	고창	고창읍읍 내리	863-65	대	159	159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연 번	위 치		지번 (당초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 고
	군	면·리			공부상 면적	편입면 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명세	
								245				
15	고창	고창읍읍 내리	863-66	대	162	162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16	고창	고창읍읍 내리	863-87	천	1,462	122	건설부	건설부				
17	고창	고창읍읍 내리	863-80	대	139	139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18	고창	고창읍읍 내리	863-82	대	307	105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19	고창	고창읍읍 내리	863-81	대	145	145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20	고창	고창읍읍 내리	863-85	대	308	308	조옥*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				
21	고창	고창읍읍 내리	863-84	대	169	169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22	고창	고창읍읍 내리	636-12	대	56	56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23	고창	고창읍읍 내리	863-61	대	132	132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24	고창	고창읍읍 내리	636-22	대	252	252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25	고창	고창읍읍 내리	636-21	대	215	215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26	고창	고창읍읍 내리	863-83	대	298	298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27	고창	고창읍읍 내리	636-20	도	86	66	유선*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				
28	고창	고창읍읍 내리	634-6	대	189	39	유옥*	고창군 고수면 원계1길 ***				
29	고창	고창읍읍 내리	636-18	대	178	18	김명*	서울강 남구 일원동 ***				
30	고창	고창읍읍 내리	863-184	제	2,830	63	건설부	건설부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조서

공사명 : 고창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명	구조 및 규격	편입 수량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명세	
1	고창읍 읍내리	636-10	주택	목조기와 (공가)	45.10m ²	김동철	고창군 고창읍 보릿골로 ***	고창농업협 동조합	전라북도고 창군 고창읍 읍내리 656-1	근저당권	
			창고	블럭스레트	2.88m ²						
			화장실	블럭강판	1.20m ²						
			담장	블럭	51m						
			대문	철제	1식						
			감나무		2주						
			동백나무		1주						
			뽕나무		1주						
			칠쪽		10주						
			대추나무		3주						
			오동나무		3주						
2	고창읍 읍내리	636-11 863-62	주택	블럭, 목조강판	70.80m ²	김복순	고창읍 읍내리 ***				
			보일러실	블럭강판	6.16m ²						
			화장실	블럭스레트	2.70m ²						
			까데기	칠판이포 강판	12.00m ²						
			장독대		1식						
			바닥포장	콘크리트	36.00m ²						
			담장	블럭	6m						
			대문	천제	1식						
			화단		1식						
			감나무		1주						
			석류나무		2주						
			동백나무		1주						
			단풍나무		1주						
			장미		1주						
			칠쪽 등		5주						
3	고창읍읍 내리	863-64	주택	목조및 블럭조 강판지붕	65.00m ²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명	구조 및 규격	편입 수량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명세	
			화장실	조적슬레브	4.16m ³						
			까데기	철파이프 강판	12.00m ³						
			까데기	목조강판	11.70m ³						
			바닥포장	콘크리트	26.00m ³						
			담장	블럭	7m						
			대문		1식						
			화단		1식						
			석류나무		1주						
			동백나무		2주						
4	고창읍읍 내리	863-65	주택	목조및 블럭조 강판	50.40m ³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까데기	철파이프 강판	8.10m ³						
			주택	블럭 강판	29.40m ³						
			까데기	목조강판	6.50m ³						
			까데기	철파이프 강판	5.00m ³						
			담장	블럭	8m						
			대문	조적슬레브	1식						
			바닥포장	콘크리트및 보도블럭	20.00m ³						
			화단		1식						
			무화과		1주						
			관상수		1주						
			복분자		30주						
5	고창읍읍 내리	636-22	주택	목조강판	37.80m ³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보일러실 다용도실	블럭강판	12.60m ³						
			창고	블럭강판	19.84m ³						
			창고	블럭강판	20.28m ³						
			창고	벽돌스레트	1.50m ³						
			수도대	콘크리트	1식						
			담장	벽돌	20m						
			담장	블럭	35m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명	구조 및 규격	면입 수량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명세	
			대문	철제	1식						
			석류나무		2주						
			자두나무		1주						
			대추나무		1주						
			감나무		1주						
6	고창읍읍 내리	863-80	주택	목조및블럭 판넬	96.90m ²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다용도실	목조강판	6.20m ²						
			화장실	블럭스레트	1.20m ²						
			창고	블럭판넬	5.60m ²						
			바닥포장	콘크리트	35.00m ²						
			담장	블럭	9.5m						
			대문	철제	1식						
7	고창읍읍 내리	863-82	주택	벽돌및블럭 스레트	76.50m ²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보일러실	블럭스레트	3.00m ²						
			주택	블럭스레트	29.58m ²						
			보일러실	블럭스레트	2.40m ²						
			세탁실	목조스레트	2.24m ²						
			까데기	철파이프 강판	7.70m ²						
			바닥포장	콘크리트	45.00m ²						
			대문및 통로	블럭스레트	6.00m ²						
			장독대		1식						
			수도대		1식						
			담장		14.0m						
			감나무		6주						
			오가피		2주						
			대추나무		3주						
8	고창읍읍 내리	863-84	주택	벽돌및블럭 강판	60.00m ²						
			창고	블럭강판	25.50m ²						
			까데기	목조스레트	11.00m ²						
			담장	블럭	31m						
			장독대	콘크리트	1식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명	구조 및 규격	면적 수량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명세	
9	고창읍읍 내리	634-10	바닥포장	콘크리트 보도블럭	37.00m ²						
			대문	철재	1식						
			화단		1식						
			감나무		7주						
			대추나무		1주						
			포도나무		1주						
			매실나무		1주						
			동백나무		4주						
			석류나무		2주						
			철쭉		5주						
10	고창읍읍 내리	863-85	판매점	경량철골조판넬	9.4m ²	김동철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				
			사무실	경량철골조 판넬 및 벽돌조	42.75m ²						
			영업보상	신한진부동산	1식						
11	고창읍읍 내리	863-85	주택	블록(적벽돌), 강관, 심야전기	177.4m ²	조옥현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				
			주택	블록(미장), 함석	73.90m ²						
			창고	"	12.50m ²						
			보일러실	판넬	6.50m ²						
			까테기	함석	5.00m ²						
			장독대	콘크리트	1식						
			담장	블록(양면미장)	30.00m ²						
			바닥포장	콘크리트	50.00m ²						
			간접 보상 <small>금액</small>	주거비, 이사비, 이주정착금	1식						

고창군 고시 제2016 - 74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 따라
건물 등에 새로이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8. 19.

고 창 군 수

○ 도로명주소 고시대상 : 전북 고창군 고수면 문수로 26외 13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도 열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종합민원과(☎560-2415)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 고창군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전면시행

- 도로명주소는 2014. 1. 1.부터 공법관계는 물론 우리의 모든 생활주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순번	지번	도로명주소
1	전라북도 고창군 고수면 상평리 218	전라북도 고창군 고수면 문수로 26
2	전라북도 고창군 아산면 반암리 515-1	전라북도 고창군 아산면 반암호암길 20-10
3	전라북도 고창군 아산면 삼인리 163	전라북도 고창군 아산면 삼인길 31-15
4	전라북도 고창군 아산면 삼인리 163	전라북도 고창군 아산면 삼인길 31-17
5	전라북도 고창군 성송면 판정리 474	전라북도 고창군 성송면 양판길 228-8
6	전라북도 고창군 신림면 무림리 424-65	전라북도 고창군 신림면 신림로 71-2
7	전라북도 고창군 신림면 무림리 424-64	전라북도 고창군 신림면 신림로 71-4
8	전라북도 고창군 신림면 무림리 424-63	전라북도 고창군 신림면 신림로 71-6
9	전라북도 고창군 신림면 무림리 424-62	전라북도 고창군 신림면 신림로 71-8
10	전라북도 고창군 신림면 무림리 424-61	전라북도 고창군 신림면 신림로 71-10
11	전라북도 고창군 신림면 무림리 424-60	전라북도 고창군 신림면 신림로 71-12
12	전라북도 고창군 신림면 무림리 424-59	전라북도 고창군 신림면 신림로 71-14
13	전라북도 고창군 신림면 무림리 424-29	전라북도 고창군 신림면 신림로 71-16
14	전라북도 고창군 신림면 무림리 424-66	전라북도 고창군 신림면 신림로 73

고창군 고시 제 2016 - 75호

홍덕면 농촌중심지(선도지구) 활성화사업 기본계획 고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홍덕면 농촌중심지(선도지구) 활성화사업 기본계획을 수립 및 승인하고 농어촌정비법 제5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일

고 창 군 수

1. 사업명 : 홍덕면 농촌중심지(선도지구) 활성화사업

2. 목적 : 농어촌지역의 거점공간인 면소재지에 교육, 문화, 복지시설 등의 불특정 다수 주민이 이용가능한 적정수준의 시설물을 확충함으로써 면소재지의 거점기능을 강화하고 기초서비스 기능향상을 도모

3. 사업비 : 8,000백만원(지특 70% 지방비 30%)

4. 주요 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분야 : 하모니센터 조성 $A=915m^2$, 청소년 문화의집 리모델링 $A=644m^2$ 공영주차장 정비 $A=600m^2$

○ 지역소득증대분야 : 전통시장 활성화 1식

○ 지역경관개선분야 : 배풍산 정비 $L=800m$, 중심가로정비 1식

○ 지역역량강화분야 : 교육 및 견학, 컨설팅, 홍보마케팅, 부대비용, 경영지원 등

5. 사업시행자 : 고창군수(위탁시행자 한국농어촌공사 고창지사)

6. 사업시행기간 : 2015. 01. ~ 2018. 12.

7. 기본계획 열람 장소 : 고창군청 건설도시과 (☎ 063-560-2724)
한국농어촌공사 고창지사(☎ 063-560-1519)

고창군 고시 제2016 - 76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 따라
건물 등에 새로이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9. 2.

고 창 군 수

○ 도로명주소 고시대상 : 전북 고창군 신림면 석암길 66외 13개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도 열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종합민원과(☎560-2415)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 고창군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전면시행

- 도로명주소는 2014. 1. 1.부터 공법관계는 물론 우리의 모든 생활주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순번	지번	도로명주소
1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노동리 72-6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노동로 342-6
2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신월리 499-44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호암안길 11-16
3	전라북도 고창군 아산면 학전리 1025	전라북도 고창군 아산면 희어재로 435-17
4	전라북도 고창군 상하면 자룡리 551	전라북도 고창군 상하면 고리포길 192-23
5	전라북도 고창군 상하면 검신리 508	전라북도 고창군 상하면 상라길 15-14
6	전라북도 고창군 해리면 광승리 1409	전라북도 고창군 해리면 명사십리로 612-94
7	전라북도 고창군 해리면 동호리 615-14	전라북도 고창군 해리면 명사십리로 919
8	전라북도 고창군 성송면 산수리 12-15	전라북도 고창군 성송면 대성로 420-41
9	전라북도 고창군 성송면 산수리 6	전라북도 고창군 성송면 외원길 36
10	전라북도 고창군 성송면 암치리 179	전라북도 고창군 성송면 암치2길 26-33
11	전라북도 고창군 성송면 향산리 287	전라북도 고창군 성송면 향산길 112-5
12	전라북도 고창군 대산면 춘산리 853-2	전라북도 고창군 대산면 발산길 17-4
13	전라북도 고창군 심원면 용기리 7-1	전라북도 고창군 심원면 선운대로 2371
14	전라북도 고창군 신림면 자포리 774	전라북도 고창군 신림면 석암길 66

고창군 고시 제2016-77호

고창 군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고창군계획시설(주차장)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고창군청 건설도시과(☎063-560-256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고 창 군 수
2016년 9월 9일

1. 실시계획인가 내용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 시행지	면적 또는 규모(m ²)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착공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비고
종 류	명 칭					
군계획 시설 (주차장)	중앙가구 앞 공영주차장 공사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324-57번지 일원	A=1,119m ²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고창군수	실시계획인가일 ~ 2017. 7. 31.	

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 권리자의 성명 · 주소 : 따로 붙임

3.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4. 관계도서 : 계재생략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공사명 : 중앙가구 앞 공영주차장 공사

연 번	소재지	당초 지번	편입 지번	지목	지적 (m ²)	편입 면적 (m ²)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주 소	성명	주소	성명	종류
1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324-57	324-57	대	528	528	고창읍 중앙로 245	고창군			
2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324-58	324-58	대	155	155	고창읍 남정12길6	김금순			
3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324-59	324-59	대	251	251	고창읍 중앙로 245	고창군			
4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324-138	324-138	대	48	48	고창읍 중앙로 245	고창군			
5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583-6	583-6	전	137	137	고창읍 중앙로 245	고창군			

수용 또는 사용할 지장물의 세목조서

□ 공사명 : 중앙가구 앞 공영주차장 공사

연 번	소지지	지번	물건의 종류	규격 및 구조	면입수량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주 소	성 명	주소	성명	종류
1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324-58	주택	연와강판	107.5	m ²	고창군 고창읍	김 순		
			계단	콘크리트	1.0	식				
			창고	경량철 골강판	18.49	m ²				
			대문	철재	2.0	식				
			담장	블록 한식머리	21.0	m				
			바닥 포장	콘크리트	45.5	m ²				
			간접 보상금		1	식				

고창군 고시 제2016 - 78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 따라
건물 등에 새로이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9. 13.

고 창 군 수

○ 도로명주소 고시대상 : 전북 고창군 고창읍 남구4길 15외 8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도 열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종합민원과(☎560-2415)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 고창군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전면시행

- 도로명주소는 2014. 1. 1.부터 공법관계는 물론 우리의 모든 생활주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순번	지번	도로명주소
1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522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남구4길 15
2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월곡리 600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월곡공원2길 32-1
3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월산리 256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산정안길 29
4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신월리 30-1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신월길 35-42
5	전라북도 고창군 공음면 두암리 399	전라북도 고창군 공음면 형제동길 34
6	전라북도 고창군 상하면 하장리 33	전라북도 고창군 상하면 하장신평길 142-3
7	전라북도 고창군 대산면 중산리 962, 961-4	전라북도 고창군 대산면 중산길 32
8	전라북도 고창군 신림면 자포리 520-3	전라북도 고창군 신림면 해암길 62
9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면 수동리 717-7, 717-2, 718-2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면 인촌로 1018

고창군 고시 제2016 - 80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 따라
건물 등에 새로이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9. 30.

고 창 군 수

○ 도로명주소 고시대상 : 전북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170-6외 16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도 열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종합민원과(☎560-2415)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 고창군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전면시행

- 도로명주소는 2014. 1. 1.부터 공법관계는 물론 우리의 모든 생활주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순번	지번	도로명주소
1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863-3, 863-7, 863-94, 863-95, 863-97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170-6
2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월암리 172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수월길 31-1
3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월산리 215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산정안길 5-8
4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월산리 525-7, 527-7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월산길 4-4
5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 268, 257-2, 257-4, 258, 258-1, 266, 266-1, 267, 269, 271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보릿골로 57-15
6	전라북도 고창군 고수면 황산리 210-1	전라북도 고창군 고수면 와촌성산1길 53
7	전라북도 고창군 고수면 은사리 377-2	전라북도 고창군 고수면 문수로 256
8	전라북도 고창군 무장면 목우리 490-1	전라북도 고창군 무장면 목우신흥길 42-19
9	전라북도 고창군 무장면 덕림리 421	전라북도 고창군 무장면 방축대촌길 31
10	전라북도 고창군 해리면 하련리 101-1, 101-2, 104-4	전라북도 고창군 해리면 동시길 15
11	전라북도 고창군 심원면 하전리 996-1	전라북도 고창군 심원면 서전길 55-59
12	전라북도 고창군 신림면 법지리 437-11, 437-23, 698	전라북도 고창군 신림면 사천길 11-15
13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면 수남리 407-4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면 선양길 21-5
14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면 수남리 407-3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면 선양길 21-7
15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면 수남리 407-1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면 선양길 21-9
16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면 상암리 733-1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면 석암신농원길 164-16
17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면 용산리 22-29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면 용산용흥길 63-59

고창군 고시 제2016 - 호

지적측량기준점 폐기 고시

멸실된 측량기준점에 대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폐기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6일

고창군수

순 번	기준점 명칭	기준점 번호	좌 표		소재지	기 준 원점명	설치일자	폐기일자
			종선(X)	횡선(Y)				
1	도근점	6820	212166.02	170703.81	고창군 고수면 황산리 308-8	중부원점	2009-04-23	2016-10-06
2	도근점	4684	214622.38	169645.54	고창군 고수면 봉암리 1286	중부원점	2001-05-01	2016-10-06
3	도근점	1237	228416.38	165581.85	고창군 부안면 봉암리 824	중부원점	1996-08-14	2016-10-06
4	도근점	7429	212661.01	164071.99	고창군 무장면 강남리 70-1	중부원점	2010-05-25	2016-10-06
5	도근점	6258	204634.67	163348.39	고창군 대산면 매산리 199-2	중부원점	2008-12-10	2016-10-06
6	도근점	6259	204620.28	163267.33	고창군 대산면 매산리 195-2	중부원점	2008-12-10	2016-10-06
7	도근점	5811	223711.48	169352.54	고창군 부안면 오산리 201-5	중부원점	2006-01-11	2016-10-06
8	도근점	4297	211027.89	166243.29	고창군 성송면 낙양리 1781	중부원점	1999-04-08	2016-10-06
9	도근점	4303	211159.84	166323.77	고창군 성송면 낙양리 1778	중부원점	1999-04-08	2016-10-06
10	도근점	6880	211138.99	165478.64	고창군 성송면 낙양리 1107-4	중부원점	2009-04-23	2016-10-06
11	도근점	5815	223796.9	169808.02	고창군 부안면 오산리 77-3	중부원점	2002-10-23	2016-10-06
12	도근점	7892	227208.23	177195.09	고창군 성내면 월성리 398	중부원점	2011-08-24	2016-10-06
13	도근점	4764	227648.42	177866.69	고창군 성내면 월성리 230-9	중부원점	2001-05-15	2016-10-06
14	도근점	2039	214021.46	168511.64	고창군 고수면 우평리 617-5	중부원점	1998-06-17	2016-10-06
15	도근점	7605	216984.04	151054.17	고창군 상하면 용정리 264-11	중부원점	2010-05-25	2016-10-06
16	도근점	7664	217373.1	159888.68	고창군 해리면 평지리 369-2	중부원점	2010-05-25	2016-10-06
17	도근점	6933	207182.5	167853.57	고창군 성송면 판정리 52-2	중부원점	2009-04-23	2016-10-06
18	도근점	6934	207205.39	167812.57	고창군 성송면 판정리 52-2	중부원점	2009-04-23	2016-10-06
19	도근점	6935	207228.75	167754	고창군 성송면 판정리 산6-2	중부원점	2009-04-23	2016-10-06
20	도근점	7458	209938.74	164711.3	고창군 무장면 덕림리 300-4	중부원점	2010-05-25	2016-10-06
21	도근점	7116	204685.86	159942.33	고창군 대신면 율촌리 467-22	중부원점	2009-04-23	2016-10-06
22	도근점	8156	222296.7	156762.55	고창군 심원면 주산리 715-2	중부원점	2011-08-24	2016-10-06
23	도근점	7025	205420.16	162869.17	고창군 대산면 매산리 548-2	중부원점	2009-04-23	2016-10-06

24	도근점	2200	217104.75	162773.56	고창군 아산면 학전리 1309	중부원점	1998-07-31	2016-10-06
25	도근점	8127	226141.74	159649.35	고창군 심원면 월산리 1036-3	중부원점	2011-08-24	2016-10-06
26	도근점	6896	209975.96	165994.25	고창군 성송면 괴치리 483-5	중부원점	2009-04-23	2016-10-06
27	도근점	6916	208454.51	167472.05	고창군 성송면 향산리 942	중부원점	2009-04-23	2016-10-06
28	도근점	4870	206881.16	164231.52	고창군 대산면 중산리 214-2	중부원점	2001-06-05	2016-10-06
29	도근점	333	221187.19	165445.69	고창군 아산면 반암리 333	중부원점	1995-07-25	2016-10-06
30	도근점	323	221046.1	165357.56	고창군 아산면 반암리 162	중부원점	1995-07-25	2016-10-06
31	도근점	4777	227906.11	168435.81	고창군 부안면 수양리 1402	중부원점	2001-06-09	2016-10-06
32	도근점	2817	210230.81	158418.47	고창군 무장면 신촌리 902	중부원점	1998-07-04	2016-10-06
33	도근점	6186	217622.14	156989.17	고창군 해리면 송산리 1441	중부원점	2004-12-31	2016-10-06
34	도근점	7427	211833.72	164703.07	고창군 무장면 목우리 507	중부원점	2010-05-25	2016-10-06
35	도근점	7136	204152.18	158879.28	고창군 대산면 연동리 368	중부원점	2009-04-23	2016-10-06
36	도근점	4463	218152.95	172395.82	고창군 신림면 부송리 582	중부원점	1999-05-04	2016-10-06
37	도근점	4473	218006.77	172328.34	고창군 신림면 부송리 산92-4	중부원점	1999-05-04	2016-10-06

고창군 고시 제2016-83호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 고시(안)

『저수지 · 댐의 안전관리 및 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해위험저수지를 아래와 같이 지정 · 고시 합니다.

2016. 10. 14.



1. 재해위험저수지 지정현황

1. 명칭	2. 위치		3. 규모			4. 저수지 관리자	비고
	읍면	리	저수량 (천 m³)	길이 (L)	높이 (H)		
계	1개소						
남동1제	공음	석교	26.9	181	5.8	고창군수	

2. 지정사유 : 저수지 정밀안전진단결과 D급 저수지로 판정되어 재해위험성이 높고 인명피해의 우려가 있어 위험저수지로 지정 · 고시하고 관리하기 위함

3. 재해위험저수지 관리기관 : 전라북도 고창군청(건설도시과)

4. 재해위험저수지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지사항

- 농어촌정비법 제18조 제3항 각호의 행위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상 주요 부분을 손괴하여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허락 없이 수문을 조작하거나 용수를 인수함으로써 농어촌용수의 이용·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 ※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시설물관리자와 협의하시기 바람.

5. 재해위험저수지 지정일 : 2016. 10. 14.

6. 문 의 처 : 고창군청 건설도시과(063-560-2555)

고창군 공고 제2016 - 894호

교촌지구 내 사유재산(건물) 소유권 사실 확인 공고

1. 공고의 목적

교촌지구 내 사유재산(건물)의 보상협의를 통하여 건물을 철거하고자 보존 등기가 되지 아니한 아래 건물에 대하여 건물 소유권 사실을 확인코자 공고 합니다.

2. 정당한 권리자(소유자)로 확인 받고자 하는 사항

소유사실 확인대상 건물					정당한 권리자로 확인 받고자 하는자		
소재지	지번	종류	구조	면적(m ²)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교촌리	139-19	가옥	조립식판넬	97.13	고창읍 교촌1길	고길	55.01.29
"	"	"	블록강판	42.75	고창읍 교촌1길	홍근	50.07.03
"	"	"	블럭강판	45.00	고창읍 교촌1길	고길	55.01.29
교촌리	139-16	가옥	블럭강판	97.30	고창읍 교촌4길	한철	41.11.12
"	"	"	블럭스레트	63.00	고창읍 교촌4길	나숙	57.12.17
"	"	"	블럭스레트	57.04	고창읍 교촌4길	김기	35.05.11

3. 건물 등(보상물건) 현황

건물 소재지	지 번	종 류	구 조	수량	비 고
고창읍 교촌리	138-19	주 택	조립식판넬	1동	
		주 택	블록강판	1동	
		주 택	블럭강판	1동	
고창읍 교촌리	138-16	기타 지장물		1식	
		주 택	블럭강판	1동	
		주 택	블럭스레트	1동	
		주 택	블럭스레트	1동	
		기타 지장물		1식	

4. 공부상의 명의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등

- 관계공부(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의 등재 사실 확인이 안 됨.

5. 건물 등 취득일 및 취득원인 : 알 수 없음

6. 기타사항

상기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분은 공고기간 내에 고창군수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7. 공고기간 : 2016. 8. 1 ~ 2016. 8. 31.(1개월)

2016. 8. 1.

고 창 군



고창군 공고 제2016 - 900호

고창황산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열람 공고

전라북도 고창군 고수면 황산리 272번지 일원의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공공주택 특별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청취와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공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8. 3.

고 창 군 수

1. 공공주택지구 지정제안서

제안자	지구명	위치	면적(m ²)	용도지역	계획 인구 및 세대수
한국토지주택공사	고창황산 공공주택지구	전라북도 고창군 고수면 황산리 272번지 일원	19,482	계획관리	330인(150세대)

2. 열람내용 : 지구지정 제안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3. 열람기간 : 2016. 8. 3. ~ 2016. 8. 17.(14일간)
4. 열람장소 : 고창군청 종합민원과(☎063-560-2396), 고수면사무소
5. 관계도서 제안서 : 열람장소에 비치
6. 기타사항 :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고창군청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창군 공고 제2016-931호

고창 군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인가 전 열람공고

고창군계획시설(주차장)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같은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고창군청 건설도시과(☎063-560-256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고 창 군 수
2016년 08월 19일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고창군 고창읍 324-57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군계획시설(주차장)
 - 명 칭 : 중앙가구 앞 공영주차장 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A=1,119m²
4.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성 명 : 고창군수(건설도시과장)
 - 주 소 :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17. 7. 31
6. 열람(의견제출)의 일시 및 장소
 - 일 시 : 도보계재 다음날로부터 14일간
 - 장 소 : 고창군청 건설도시과(☎063-560-2563)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조서 : 따로 붙임
8.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9. 관계도서 : 계재생략
10. 의견제출 :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건설도시과(☎063-560-25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공사명 : 중앙가구 앞 공영주차장 공사

연 번	소재지	당초 지번	편입 지번	지 목	지적 (m ²)	편입 면적 (m ²)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주 소	성명	주소	성명	종류
1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324-57	324-57	대	528	528	고창읍 중앙로 245	고창군			
2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324-58	324-58	대	155	155	고창읍 ;	김 순			
3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324-59	324-59	대	251	251	고창읍 중앙로 245	고창군			
4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324-138	324-138	대	48	48	고창읍 중앙로 245	고창군			
5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583-6	583-6	전	137	137	고창읍 중앙로 245	고창군			

수용 또는 사용할 지장물의 세목조서

□ 공사명 : 중앙가구 앞 공영주차장 공사

연 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규격 및 구조	편입수량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주 소	성명	주소	성명	종류
1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324-58	주택	연와강판	107.5	m ²	고창군 고창읍	김 순		
			계단	콘크리트	1.0	식				
			창고	경량철 골강판	18.49	m ²				
			대문	철재	2.0	식				
			담장	블록 한식머리	21.0	m				
			바닥 포장	콘크리트	45.5	m ²				
			간접 보상금		1	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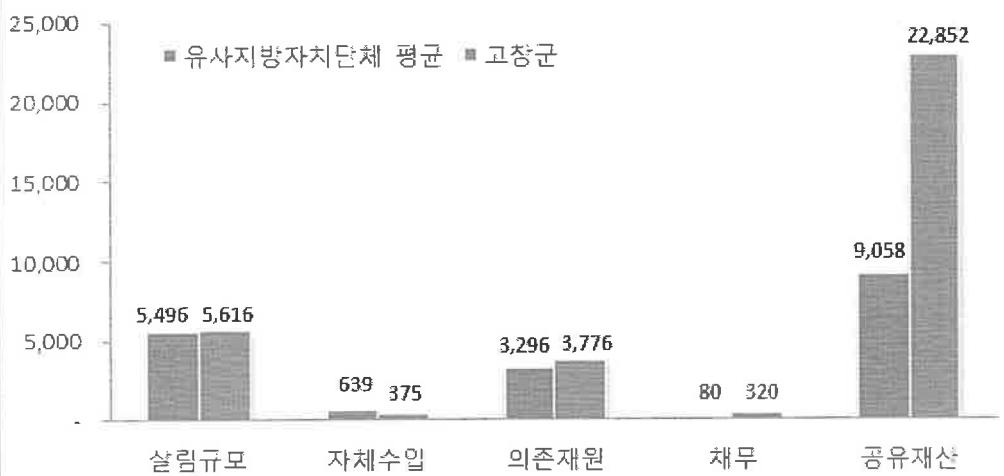
2016년 고창군 재정공시(결산)

2016. 8.

고 창 군 수 (인)

- ◆ 우리 군의 2015년도 살림규모 (자체수입 + 의존재원+지방채 및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5,616억원으로, 전년대비 120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 자체수입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375억원이며, 주민 1인당 연간 지방 세 부담액은 238천원입니다.
 - 의존재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3,776억원입니다.
 - 지방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465억원입니다.
- ◆ 2015년말 기준으로 우리 군의 채무는 320억원이며, 주민 1인당 지방채 무는 532천원입니다.
 - 공유재산은 '15년도에 1,581건 (256억원)을 취득하고, 37건(3억원)을 매각하여, 현재는 총 22,852억원의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 우리 군을 유사 지방자치단체의 평균과 살림살이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동종자치단체 살림살이 규모비교(단위: 억원)



- ◆ 우리 군의 2015년 살림규모는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5,496억원보다 120억원이 많습니다.
- 자체수입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639억원보다 264억원이 적으며, 의존재원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3,296억원보다 480억원 적습니다.
- 채무액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80억원보다 240억원 많고, 군의 1인당 채무액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156천원보다 376천원 많습니다.
- 공유재산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9,058억원과 비교하여 13,794억원이 많습니다.
- ◆ 우리 군의 '15년도 최종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8.24%이며(전국 평균 51.9%),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60.89%(전국 평균 76.3%)입니다.
- ◆ 우리 군의 2015년 최종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7억원의 적자입니다.
-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군의 재정은 유사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세입·세출예산규모는 크나, 의존재원에 의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세외수입증대와 중앙지원 재원확보에 노력을 해야 할 것이며, 지방교부세 확보 등으로 재정운용에 자율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 재정공시 링크)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기획예산실 예산팀 정광진(☎063-560-2253)

농민과 함께하는
신탁등정

2016 여성농업인 생생바우처 지원 4차 신청접수 모집공고문

여성농어업인의 반복적인 농작업 및 가사노동에서 비롯되는 만성질환 예방과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여성농어업인에게 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하고자 아래와 같이 『여성농업인 생생바우처 지원 4차 신청접수』를 하오니 여성농업인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I. 모집요강

□ 사업내용

- 사업명 : 2016년 여성농업인 생생바우처 지원(4차)
- 지원대상 : 만35세이상~만65세미만(52년생~81년생)여성농업인
- 지원내용 : 여성농어업인의 건강관리 및 문화·학습활동 지원
- 사용처 : 스포츠용품, 수영장, 종합스포츠센터, 놀이공원, 펜션·민박, 목욕탕, 찜질방 등
- 사용기간 : 카드발급일 ~ 12. 31. 까지

II. 제출서류

- 여성농업인 생생바우처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건강보험증사본지참)

III. 신청방법 및 기한

- 신청방법 : 주소지 해당 읍·면 사무소 방문 신청접수(건강보험증 사본 지참)
- 신청기한 : 2016. 9. 1. ~ 9. 26(월)
- 문의 : 고창군청 농업진흥과 최인영 주무관(063-560-2521)

2016. 9. .

고창군수

<별지 제1호>

여성농업인 생생 바우처 지원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및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여성농업인	우편번호	-	주 소	연락처(전화)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직업			
가구주	성 명		생년월일	직업			
농업 규모	농지소유 면적	ha	양축규모	소/ 돼지/ 닭/	기타/		
	임업규모	ha	어업규모	어선수/ 양식면적/	기타/		
개인정보 제공 동의사항	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당해 읍·면·동 시·군청, 농협은행 중앙회·영업본부·사군 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지사				
	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여성농업인 생생 바우처 카드 발급대상자 확정 및 관리				
	개인정보의 항목		주소, 전화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계좌번호, 영농규모, 공무원 가족, 가구주, 직장 근로지가족, 금융기관, 건강보험증번호, 건강보험(직역), 사업자등록 여부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2016. 01. ~ 2018. 12. <보유기간 경과시 파기>				
<p>신청인은 상기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기재 내용이 허위인 경우 지원금 전액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시행령 제3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 제18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조회·이용 등 활용과 「여성농업인 생생 바우처 카드」 발급을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농협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p> <p>상기 본인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여성농업인이며, 실제로 농어업에 종사함을 확인함.</p>							
2016. . .							
여성농업인(신청인) : 성명 (인)							
읍·면·동장 귀하							
<p>※ 귀하는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여성농업인 생생 바우처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p> <p>※ 구비서류 : 농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또는 농지원부), 건강보험증 사본(직장가입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포함), 사업자등록증(해당될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건강보험공단 제출용)</p>							
읍·면·동 확인 내용				확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지역 거주 여부 : 거주(), 미거주() ▪ 사업자 등록 및 전업적 직업 보유 여부 : 보유(), 미보유() ▪ 농업경영체(농지원부) 등록여부 확인 : 등록(), 미등록(), 최초 등록일() ▪ 영농규모별 지원대상 해당 여부 : 지원대상(), 비대상() 				직 성명 (서명) 직 성명 (서명) 직 성명 (서명) 직 성명 (서명)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정보주체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건강보험증 번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 “여성농업인 생생바우처” 지원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아래와 같이 관련사항을 고지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여성농업인 생생바우처 신청 관련 지원 자격 확인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직역, 직장피부양자의 경우 가입자와 관계, 직장명, 사업자등록여부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2016. 1. ~ 2017. 12월
4. 귀하는 본건 “여성농업인 생생바우처”업무와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여성농업인 생생바우처 지원 제외 등의 불이익을 받을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안함

■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의거 “여성농업인 생생바우처” 지원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공받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사항을 고지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 00시장·군수(00읍·면·동장)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여성농업인 생생바우처 신청 관련 자격 확인
3. 제공받는 개인정보의 항목 : 직역, 직장피부양자의 경우 가입자와 관계, 직장명, 사업자등록여부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동의일부터 ~ 2017. 12월
5. 동의서의 유효기간 : 동의일로부터 1년
6. 귀하는 본건 “여성농업인 생생바우처”업무와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여성농업인 생생바우처 지원 제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안함

2016년 월 일

동의인 :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고성군> 고장 가면점 1.

가맹점점호명	가맹점전화번호	NH가맹점업종명	가맹점주소
하늘마을민박	063)562-2288	펜션/민박	전라북도 고창군 검산리 삶마재로 272-80
메르팡펜션	063)564-8424	펜션/민박	전라북도 고창군 광승리 명사십리로 550
칠이헤어	063)562-3020	미용원	전라북도 고창군 교촌리 모양설로 68
사인스킨&바디	063)562-2049	화장품점	전라북도 고창군 교촌리 월곡로 30
미앤헤어	063)564-8897	미용원	전라북도 고창군 교촌리 중앙로 300
케이스타일(K.style)	063)564-7171	미용원	전라북도 고창군 교촌리 중앙로 314
헤라헤어스튜디오	063)564-7799	미용원	전라북도 고창군 교촌리 중앙로 317
라인플라츠코스메틱	070)8887-5222	화장품점	전라북도 고창군 통신리 고수동공단지길 5B A동 나호
선운신도솔펜션	063)564-4421	펜션/민박	전라북도 고창군 삼언리 삼언길 31-24
다율민박	063)564-5216	펜션/민박	전라북도 고창군 삼언리 삼언길 45
쉐르멘션	063)562-4673	펜션/민박	전라북도 고창군 삼언리 선운사로 16-16
선운텔	063)561-0890	펜션/민박	전라북도 고창군 삼언리 선운사로 16-9
햇살기독한집	063)564-0320	펜션/민박	전라북도 고창군 삼언리 선운사로 86
석정힐C.C프로샵	061)560-7024	스포츠용품점	전라북도 고창군 석정리 석정2로 192
세레노펜션	063)561-6080	펜션/민박	전라북도 고창군 선운리 인촌로 56-6
해나루펜션	063)561-5594	펜션/민박	전라북도 고창군 읍산리 연기길 21
마노아제이	070)2745-2791	화장품점	전라북도 고창군 월곡리 월곡1길 45
황민헤어아트	063)561-5319	미용院	전라북도 고창군 월곡리 월곡1길 45 상가 103
소리샘보청기	063)561-0603	의료기기 및 용품	전라북도 고창군 읍내리 남정1길 1
아고레카운셀러	063)564-0660	화장품점	전라북도 고창군 읍내리 남정4길 37
장금회헤어샾봉	063)561-2060	미용원	전라북도 고창군 읍내리 둘리로 21-1
한광의료기	063)561-5775	의료기기 및 용품	전라북도 고창군 읍내리 둘리로 58-1
월빙하우스	063)561-6619	화장품점	전라북도 고창군 읍내리 둘리로 71-3
BYC	063)562-6742	스포츠용품점	전라북도 고창군 읍내리 둘리로 92
스킨푸드 고창점	063)563-1828	화장품점	전라북도 고창군 읍내리 모양성로 41
우나무나(속옷민매점)	063)561-2491	스포츠용품점	전라북도 고창군 읍내리 모양성로 41 1층
비트로 고창대리점	063)561-0775	스포츠용품점	전라북도 고창군 읍내리 보릿골로 108
라비다 박지오 뷰티샵	063)563-8852	미용원	전라북도 고창군 읍내리 보릿골로 125
마임고창통부지사	063)563-4599	화장품점	전라북도 고창군 읍내리 보릿골로 138
신세계미용실	063)563-2062	미용원	전라북도 고창군 읍내리 성산1길 13
스티월헤어	063)561-4073	미용원	전라북도 고창군 읍내리 성산1길 8
뷰티플러스	063)563-8205	화장품점	전라북도 고창군 읍내리 성산2길 21
미 화장품	063)245-4501	화장품점	전라북도 고창군 읍내리 성산2길 23
전소회 미용실	063)564-3883	미용원	전라북도 고창군 읍내리 성산2길 23
청담 스킨케어	063)561-3277	화장품점	전라북도 고창군 읍내리 성산2길 28
블링블링(BLING BLING)	063)563-2325	화장품점	전라북도 고창군 읍내리 성산2길 31-1
더가온	063)564-8500	미용원	전라북도 고창군 읍내리 성산2길 50 1층 4호
보스톤헤어샵	063)562-3353	미용원	전라북도 고창군 읍내리 성산2길 6
터미널안경	063)561-2761	안경점	전라북도 고창군 읍내리 성산2길 6 8
제이헤어샵	063)563-8856	미용원	전라북도 고창군 읍내리 성산3길 10
카이로스	063)563-8558	미용원	전라북도 고창군 읍내리 성산3길 10
절립장 품인비 고창치사	063)563-9979	화장품점	전라북도 고창군 읍내리 성산3길 11-1 2층
고창미용실	063)561-3305	미용원	전라북도 고창군 읍내리 성산3길 7
경아머리방	063)561-5090	미용원	전라북도 고창군 읍내리 성산6길 1
진성헤어샵	063)562-1102	미용원	전라북도 고창군 읍내리 성산6길 1
쉬(SHE)	063)561-0655	화장품점	전라북도 고창군 읍내리 성산8길 27

2.

기밀점상호명	기밀점전화번호	N부기밀점업종명	기밀점주소
미인나라	063)562-0460	화장품점	전라북도 고창군 읍내리 성산길 28
사랑헤어샵	063)562-2252	미용원	전라북도 고창군 읍내리 성산로 12
헤어즌	063)561-6240	미용院	전라북도 고창군 읍내리 성산로 19 상기동 102호
고창BYC	063)564-8294	스포츠용품점	전라북도 고창군 읍내리 성산로 22 BYC매장
아리띠들고창하나로마드	063)561-2982	화장품점	전라북도 고창군 읍내리 성산로 22 고창하나로마트 1층
모휘고창점	063)561-0708	화장품점	전라북도 고창군 읍내리 성산로 36 키 고창빌딩 1층
신발에 달은 행복	063)564-1082	스포츠용품점	전라북도 고창군 읍내리 시장길 15
룰루홍헤어샵	063)560-2223	미용원	전라북도 고창군 읍내리 중거리당신로 108
스타힐링센터	063)562-7774	종합스포츠센터	전라북도 고창군 읍내리 중거리당신로 110
크로커다일 고창점	063)561-2551	스포츠용품점	전라북도 고창군 읍내리 중앙로 169
남성크로커다일	063)563-4010	스포츠용품점	전라북도 고창군 읍내리 중앙로 173
카파	063)563-3533	스포츠용품점	전라북도 고창군 읍내리 중앙로 173
올리비아토렌 고창점	063)561-6589	스포츠용품점	전라북도 고창군 읍내리 중앙로 175
아모레카운셀러	062)373-2901	화장품점	전라북도 고창군 읍내리 중앙로 180
비든생활	063)563-8976	화장품점	전라북도 고창군 읍내리 중앙로 180
한빛나노의료기	063)563-5075	의료기기 및 용품	전라북도 고창군 읍내리 중앙로 186
웨스트우드고창점	063)563-3580	스포츠용품점	전라북도 고창군 읍내리 중앙로 207 1층
뉴랜드알로에	063)561-3889	화장품점	전라북도 고창군 읍내리 중앙로 207-1 2층 4호
안경세상	063)564-7766	안경점	전라북도 고창군 읍내리 중앙로 212
미즈니안 (MS9)	063)561-5433	스포츠용품점	전라북도 고창군 읍내리 중앙로 213
안경애너저	063)563-2525	안경점	전라북도 고창군 읍내리 중앙로 213
수스	063)561-0285	스포츠용품점	전라북도 고창군 읍내리 중앙로 219
더페이스샵 고창점	063)563-3044	화장품점	전라북도 고창군 읍내리 중앙로 219
울포유 그창점	063)564-8166	스포츠용품점	전라북도 고창군 읍내리 중앙로 223
노스케이프 고창점	063)564-1133	스포츠용품점	전라북도 고창군 읍내리 중앙로 224
고창보디가드	063)562-8150	스포츠용품점	전라북도 고창군 읍내리 중앙로 229
천년의빛	063)563-1961	스포츠용품점	전라북도 고창군 읍내리 중앙로 239
썬에스테틱	063)561-1300	화장품점	전라북도 고창군 읍내리 중앙로 246 3층
친변민박	063)561-1824	펜션/민박	전라북도 고창군 읍내리 친변남로 154-2
모도헤어	063)564-8803	미용원	전라북도 고창군 읍내리 학전2길 8
준별빛섬헤어	010)6223-1026	미용원	전라북도 고창군 칠암리 금음길 42
이테리헤어샵	063)563-0134	미용원	전북 고창군 고수면 부곡리 458-5
축령산휴리	061)393-0409	펜션/민박	전북 고창군 고수면 은시리 1
고창복분자축제위원회	063)560-2399	공연장/전시장	전북 고창군 고창읍 교촌리 215-3 실기루은 고청한들기
디핀리고창점	063)563-3190	회장품점	전북 고창군 고창읍 교촌리 296-12
사넬스킨케어	063)562-2049	화장품점	전북 고창군 고창읍 교촌리 296-5
머리시강해어샵	063)564-2509	미용원	전북 고창군 고창읍 교촌리 369
현대영어사	063)561-1103	서점	전북 고창군 고창읍 교촌리 54-9
엘오가센터	063)563-7752	요기	전북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 3-2
(주)서울시·니어스엠엔에스고창	063)564-9585	펜션/민박	전북 고창군 고창읍 석정리 744-14
제일헬스스타운	063)564-8228	종합스포츠센터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리 685
이니스드리고창점	063)561-2982	화장품점	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654-1 22/
김지수헤어코디	063)563-4203	미용원	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166-3
밸리헤어샵	063)562-7755	미용원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리 192-68
주은헤어샵	063)561-3883	미용원	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197-8
동지미용실	063)563-2604	미용원	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198-8

3.

가맹점상호명	가맹점전화번호	NH가맹점업종명	가맹점주소
다보어안경	063)562 -0616	안경점	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199-6
아식스고창점	063)564 -6171	스포츠용품점	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207-3
헬덴키즈	063)562 -3800	스포츠용품점	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211-1
미사고침점	063)561 -0109	화장품점	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213-3
언더우드고창점	063)564 -1677	스포츠용품점	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213-9
월곡요기클리닉	063)563 -3236	요가	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225-2 지하
모양치과기공소	063)564 -1763	의료기기 및 유품	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311
씨채널빠리안경	0666)561 -2120	안경점	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323-12
댕기머리헤어샵	063)564 -6868	미용원	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324-32
미키하우스	063)564 -4534	화장품점	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324-44
헤어스케치	063)563 -1887	미용원	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324-53
에슬미용실	063)561 -4696	미용원	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360-4
김선애헤어센스	063)564 -4013	미용원	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364-3
현대서점 고창	063)564 -2588	서점	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444
세계사해어필	063)563 -3433	미용원	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577-7
별감머리안 미용실	010)8828-5370	미용원	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584-29
클레오파트라	063)564 -1387	화장품점	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590-6
아모레류티카운셀러	063)564 -0660	화장품점	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616-21
연세외료기	063)563 -1177	의료기기 및 유품	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620-3
대일증합스포츠	063)561 -2178	스포츠용품점	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629-12
머리마을미용실	063)562 -0567	미용원	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634-2
굿모닝파마미용실	063)561 -1303	미용원	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648-18
황토긴김방	063)563 -0303	찜질방/목욕탕/사우나	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670
이까르마	063)561 -3043	마용원	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681-148
아뜨리예	063)564 -4968	미용원	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683-11
제크커어	010)8821-6173	화장품점	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863-47
최윤희머리방	063)564 -2374	미용원	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863-53
아모레카운셀러	063)564 -0660	화장품점	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863-21
헤드고침점	063)561 -4111	스포츠용품점	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207
임페리얼	063)561 -0012	스포츠용품점	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863-110
선율산글든커슬	063)563 -3756	펜션/민박	전북 고창군 무안면 광신리 557
고창코지테마펜션	063)562 -0014	펜션/민박	전북 고창군 부안면 인촌로 56-11
구시포해수찜탕	063)561 -3324	찜질방/목욕탕/사우나	전북 고창군 상하면 자룡리 524
행복총전펜션	063)564 -6096	펜션/민박	전북 고창군 상하면 자룡리 529-33
장산민박	063)560 -0820	펜션/민박	전북 고창군 상하면 장신리 88-8
바다중경펜션	063)563 -0085	펜션/민박	전북 고창군 상하면 진암구시로 539-16
현드메이자	063)564 -6407	미용원	전북 고창군 신림면 벽송리 13-8번지
아도레 화장품	063)564 -0660	화장품점	전북 고창군 신원면 만돌리 1296
심원나나화장품	063)563 -5445	화장품점	전북 고창군 심원면 월산리 768-18
심원불가마, 펜션	063)563 -0066	찜질방/목욕탕/사우나	전북 고창군 심원면 하전리 45-3
핀란체	063)561 -6760	펜션/민박	전북 고창군 해리면 광승리 748

계절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공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16~ 17절기 계절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실시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무료 예방접종

- 기 간 : 2016. 10. 4.(화)~백신 소진 시까지(토, 일, 공휴일 제외)
- 접종시간 : 09:00~14:00(12:00~13:00 중식시간 제외)
미취학아동은 오전(09:00~12:00)만 접종
- 장 소 : 고창군 보건소, 면 보건지소, 상하보건진료소
인플루엔자 위탁체결병원(65세 이상자)
- 대 상 : 25,620명(예방접종 권장대상자)
- 백 신 : 4가백신(A형 H1N1, A형 H3N2, 2개의 B형 바이러스)
- 대상자별 준비물

무료 대상자	준비물
만 60세 이상 어르신 (1956. 12. 31일 이전 출생자)	주민등록증 및 경로우대증
6개월이상~ 만6세이하, 미취학 아동	등본
기초생활보장수급자(1,2종자)	의료급여증
사회복지시설	시설인적사항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증
다자녀가구(3자녀이상)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고창읍 마을별 예방접종일 : 『별첨1』
- 면지역 마을별 예방접종일 : 해당면 보건지소에 문의 『별첨2』
- 65세 이상자 무료 국가예방접종 실시 장소 안내
 - 인플루엔자 위탁체결 의료기관 9개면 26개소 『별첨3』
(고창읍 13, 무장 2, 상하 1, 해리 2, 대산 3, 심원 1, 흥덕 2, 부안 1, 성내 1)
 - 병의원이 없는 6개 면은 해당 보건지소에서 자체 접종 가능
(고수, 아산, 공음, 성송, 성내, 신림)

유료 예방접종

- 기 간 : 2016. 10. 4.(화)~백신 소진 시까지(토, 일, 공휴일 제외)
- 접종시간 : 09:00~14:00(12:00~13:00 중식시간 제외)
- 장 소 : 고창군 보건소, 면 보건지소, 상하면(상하보건진료소)
- 대 상 : 고창군민
- 접종금액 : 7,600원

접종 문의 : 고창군보건소 예방접종실(☎ 560-8757~8)

[별첨1] 고창읍 마을별 인플루엔자 접종 일정

- 접종일정 : 2016. 10. 4. ~ 10. 7.(4일), 미접종자는 약품소진 시까지 지속접종
- 대상 : 고창읍 93개 마을

10. 4(화)		10. 5(수)		10. 6(목)		10. 7(금)	
마을	인구수(명)	마을	인구수(명)	마을	인구수(명)	마을	인구수(명)
동 산	240	수 북	226	상 월	188	화평	256
동 문	338	성 산	235	하 월 1	355	화신	433
동 촌	118	신 성	202	하 월 2	334	학전	113
천 북	238	성 신	317	주 공 1	276	내동	94
모 양	98	반 룽	304	주 공 2	224	은동	94
중 앙	159	반 곡 1	474	주 공 3	146	덕산	160
성 남	243	반 곡 2	448	주 공 4	213	신덕산	325
남 흥 1	297	반 곡 3	315	제 일 1	416	백 양	109
남 흥 2	227	반 곡 4	317	제 일 2	360	월 계	97
진 흥	234	교 촌	296	제 일 3	629	주 곡	144
남 구	350	교 흥	198	제 일 4	377	신 상	99
삼 영	293	성 덕	676	꿈에그린	326	사 계	82
성 북	148	입 석	665	월 곡	276	도 산	93
서 문	120	교 신	540	월 암	84	지 동	70
미 영	338	청 룽	220	수 월	98	부 귀	42
상 원	404	청 남	300	석 정	76	매 산	45
서 흥	266	청 하	468	온 샘	374	죽 림	138
신 흥	194	용 주	302	월 산	139	송 암	76
삼 흥	511			산 정	124	신 월	111
시 흥	299			노 동	50	신 동	78
대 성	287			대 양	63	호 암	45
				화 산	17	덕 정	153
				호 동	45	석 탄	59
						율 계	101
						신 촌	78
						석 교	134
						백 석 1	472
						백 석 2	387
						백 석 3	507
						성 두	157
						상 성	52
총계	5,402		6,503		5,190		4,804

동리문화사업회 공고 제2016-1호

제26회 동리대상 수상후보자 공개모집

판소리 사설 여섯마당을 집대성하신 동리신재효선생의 유업을 계승·발전시키고자 판소리 진흥에 뛰어난 업적을 남긴 자(법인포함)를 선정하여 판소리 최고 권위를 인정 받아온 동리대상을 시상하고자 수상 후보자를 공개 모집합니다.

2016. 9. 7.

사단법인 동리문화사업회

□ 개요

- 모집부문 : 판소리 창자, 고수, 연구자 또는 판소리진흥에 기여한 자(법인포함)
- 모집방법 : 공개모집 추천
- 시상인원 : 1명
- 주관 : 사단법인 동리문화사업회
- 훈격/부상 : (사)동리문화사업회이사장 / 상금 15백만원
- 시상식 : 2016. 11. 6(일) 14:00 / 동리국악당

□ 수상후보자 추천

- 추천단체 : 국·공립 국악관련 기관·단체
판소리 관련단체 및 국악대회(훈격: 대통령상) 주관단체
- 추천서류
 - 동리대상 수상후보자 추천서 1부
 - 수상후보자 공적조서 1부(공적 증빙서류 포함)
- 접수기간 : 2016. 9. 7(수) ~ 10. 7(금)
- 10월 7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공휴일, 토·일요일은 접수하지 않음

4. 접수처 : 전북 고창군 고창읍 모양성로 11길 고창문화의전당
(☎ 063-560-8041)

5. 추천대상

- 가. 창자·고수 : 국가·지방(광역) 무형문화재 또는 관련 분야에 탁월한 업적으로 판소리 진흥에 크게 기여한 자.
- 나. 판소리 연구가 : 판소리 연구에 탁월한 업적으로 판소리 진흥에 크게 기여한 자.
- 다. 판소리 진흥에 크게 기여한 자(법인포함) : 판소리 진흥에 크게 기여한 자.(법인포함)
- 라. 제외자 : 동리 신재효선생의 정신에 어긋나거나 기타 각종 비위, 부조리 및 도덕성에 흠결이 있는 자.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행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동리대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 되는 자.

□ 수상자 선정

1. 선정방법 : 동리대상 심사위원회 비공개 토론 심사 무기명 투표
(심의내용 미공개)

2. 수상자 승인 : 고창군수

3. 수상자 발표 : 고창군 홈페이지

4. 시상식

가. 일시 및 장소 : 2016. 11. 6(일) 14:00 / 동리국악당

나. 행사내용 : 혼다례, 시상식, 축하공연

다. 시상금 : 15백만원

5. 기타사항

기타 수상후보자 추천 및 선정에 관한 사항으로 본 공고내용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창군조례, 동리문화사업회 정관, 동리대상시행규칙, 동리문화사업회 이사회의 결정에 의함.

서식 제1호

제26회 동리대상 수상후보자 추천서

성명	(본명) (한자)	생년월일		명함판 사진
	(예명) (한자)	전화번호	자택 핸드폰	
분야	창자, 고수, 연구가, 판소리진흥에 기여한 자(법인포함)			
본적				
주소				
학력				
경력				
주요 저작물				
공적 사항				

※ 추천서는 2매 이내로 작성

※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초본,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2016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인)

(사)동리문화사업회 귀하

고창군 공고 제2016 - 1016 호

분묘 개장 공고(1차)

고창 자연마당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18조, 1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일

고 창 군 수

1. 분묘의 위치 : 전북 고창군 고창읍 노동리

401-2, 403, 403-1, 403-2, 403-3, 404-1, 406-1, 409, 409-1, 409-2, 409-3, 409-4, 410, 410-1, 410-2, 410-3, 410-4, 410-5, 410-6, 411, 419, 419-1, 419-2, 419-3, 419-4, 419-5, 419-6, 419-7, 419-8, 419-9, 419-10, 419-11, 419-12, 420, 420-1, 420-2, 420-3, 420-4, 420-5, 420-6, 420-7, 420-8, 420-9, 420-10, 421, 421-1, 422, 422-1, 422-2, 422-3, 422-4, 422-5, 423, 423-1, 423-2, 423-3, 424, 424-1, 424-3, 424-4, 438, 산67, 산67-2, 산67-4, 산68, 산68-1, 산68-2, 산68-4, 산68-18, 산68-21, 산68-26, 산68-27, 산68-28

2. 개장기수 : 395기

3. 개장사유 : 고창 자연마당 조성사업에 편입

4.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5. 개장방법 : 공고기간 만료후 화장하여 납골 안치

가. 유연묘지 : 신고후 연고자와 합의개장

나. 무연묘지 : 공고기간 만료후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자(공고자)임의 개장

6. 개장후 안치장소 : 고창군 추모의 집(고창군 부안면 용산리 산121-2)

7. 안치기간 : 안치일로부터 10년

8. 신고요령 :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호적), 제적, 족보, 묘지신고서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지에서 신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분묘는 우리군에서 임의 개장하겠습니다.

9. 기타사항 : 분묘개장 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개장공사 중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10. 신고처 : 고창군청 환경위생과 환경정책팀(☎ 063-560-2873)

(사)동리문화사업회 공고 제2016- 2호

제29회 전국 어린이 판소리 왕중왕대회 개최 공고

판소리 사설 여섯마당을 집대성하신 동리신재효선생의 유업의 계승 및 판소리의 발전과 인재 육성을 위한 전국 어린이 판소리 왕중왕 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2016. 9. 26.

사단법인 동리문화사업회

- 1. 대회목적** ▷ 차세대 어린이 판소리 명창을 발굴 육성한다
▷ 판소리 여섯마당을 집대성하신 동리 신재효선생의 문화예술사적 업적을 기념하며 유업을 계승한다
▷ 전국 제일의 어린이 판소리 등용문으로 그 역할을 다한다
- 2. 대회방침** : 판소리 꿈나무를 발굴 육성하며 축하 공연과 병행 실시하여 국악 축제 한마당으로 개최한다
- 3. 대회명칭** : 제29회 전국 어린이 판소리 왕중왕 대회
- 4. 대회기간** ▷ 예선 : 2016. 11. 13(일) 13:00 ~
▷ 본선 : 2016. 11. 14(월) 13:00 ~
⇒ KBS전주방송총국 녹화 방영
- 5. 대회장소** : 동리국악당
- 6. 주최** : 고창군 · KBS전주방송총국
- 7. 주관** : (사)동리문화사업회
- 8. 참가자격** : ▷ 전국의 남·여 초등학생
▷ 2015 ~ 2016년 기간에 전국대회에 참가하여 입상한 자
- 9. 참가신청** ▷ 기간 : 2016. 9. 26. ~ 11. 12. 18:00까지
▷ 접수방법 : 우편, 전화, FAX (전화FAX제출자는 대회당일 원본 제출)

10. 참가원서 배부 및 접수처

- ▷ 문화의전당 : 전북 고창군 고창읍 모양성로 11
(☎ 063-560-8041 FAX 063-560-8049)
- ▷ KBS전주방송총국 문화사업부

11. 제출사항 ▷ 소정의 참가원서 1부

- ▷ 2015 ~ 2016년 기간에 입상한 상장 또는 상패 사본 1부

12. 경연요령 ▷ 판소리 5분 이내이며 고수는 개별 동반하되 요청 시 주최측 지정 고수 가능 함

- ▷ 예선, 본선에서 부를 대목이 같지 않아야 됨
- ▷ 참가자 복장은 전통한복

13. 경연방법 : 행사당일 추첨으로 경연 순위 결정함**14. 유의사항 : 예선 30분전 동리국악당 공연장에서 접수증 발부 및 순위 추첨****15. 경연심사 ▷ 심사위원은 국악계의 권위있는 자 중에서 (사)동리문화사업회 이사장(대회장)이 위촉함**

- ▷ 심사규정
 - 예선·본선 채점은 컴퓨터로 현장에서 집계 공개함
 - 심사위원이 채점한 최고 및 최저 점수 중 각 1명의 점수는 집계에서 제외함

16. 참가비 : 참가비 없음**※ 기타사항**

본선에 진출한 어린이의 숙식(고수, 동반보호자 포함)은
(사)동리문화사업회에서 제공

시상내역

구 분	훈 경	인 원	상 금	비 고
대 상	KBS한국방송사장	1명	1,000,000원	
최우수상	고 창 군 수	1명	700,000원	
우 수 상	KBS전주방송총국장 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한국예총전북연합회장	1명 1명 1명	500,000원 500,000원 500,000원	
장 려 상	고 창 문 화 원 장 한국예총고창지회장	1명 1명	300,000원 300,000원	

제29회 전국 어린이 판소리 왕중왕 대회 참가원서

접수번호	No 2016-		
성명		성별	남·여
학교명		학년	
주소			
생년월일		연락전화	
부를대목	예선 :		
	본선 :		
※ 수상실적 (사본은 따로 붙임)			
① 대회명칭		등위	
② 대회명칭		등위	

위와 같이 제29회 전국 어린이 판소리 왕중왕 대회의 참가를 신청합니다

2016년 월 일

신청인

(인)

접수증

접수번호	No 2016 -		
성명		학교	초등학교 학년 반
부를대목	예선 :		
	본선 :		

- 2 0 1 6 년 하 반 기 -
광역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수질검사 결과 공고

고창군 공고 제 2016- 5호

『수도법』 제29조 제3항 및 『고창군 수돗물 수질평가 위원회 운영조례』 제3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 하반기 소규모급수시설 수질검사 결과를 아래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10. 11.

고 창 군 수

○ 2016년도 하반기 광역상수도 수질검사 결과

2016년 8월 광역상수도 수질검사 자료입니다.(13개 항목)

시 설 명	항 목	일반 세균	총대장 균군	대장균	암모니 아모 질소	총트리 플로 메탄	유리 잔류 염소	구리	수소 이온 농도	아연	염소 이온	철	망간	탁도	판 정
	기 준	100 CFU/ mL	불검출 /100mL	불검출 /100mL	o.5 mg/L	0.1 mg/L	4.0 mg/L	1 mg/L	5.8- 8.5 mg/L	3 mg/L	250 mg/L	0.3 mg/L	0.05 mg/L	0.5 NTU↓	
고 창 배 수 지	0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0.048	0.65	불검출	7.3	불검출	14.7	불검출	불검출	0.19	적합	
대 산 배 수 지	0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0.078	0.23	불검출	7.4	불검출	16.9	불검출	불검출	0.13	적합	
무 장 배 수 지	0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0.069	0.80	0.009	7.6	0.003	17.9	불검출	불검출	0.15	적합	
아 산 배 수 지	0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0.065	0.33	불검출	7.3	불검출	14.7	불검출	불검출	0.10	적합	
혜 리 배 수 지	0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0.064	0.40	불검출	7.4	불검출	17.7	불검출	불검출	0.13	적합	
통 덕 배 수 지	0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0.052	0.40	불검출	7.0	0.016	13.7	불검출	불검출	0.16	적합	

○ 2016년도 하반기 소규모급수시설 수질검사 결과

2016년 3/4분기 소규모 급수시설 수질검사 자료입니다.(13개 항목)

읍·면	시설명	황 독	일반 세균	총대장 균군	분원성 대장균군	불소	암모니 아민 질소	질산성 질소	염 세	미	색도	방간	탁도	알루 미늄	유리 잔류 염소	판 정
		기준	100 CFU↓ /mL	불검출 /100mL	불검출 /100mL	1.5 mg↓/L	0.5 mg↓/L	10 mg↓/L	우	우	5도↓	0.05 mg↓/L	0.5 NTU↓	0.2 mg↓/L	4.0 mg↓/L	
고수	두평	0	불검출	불검출	0.68	불검출	1.0	우	우	불검출	불검출	0.36	불검출	0.05	적합	
부안	죽도	0	불검출	불검출	0.36	불검출	8.0	우	우	불검출	불검출	0.18	불검출	0.08	적합	

고창군 공고 제2016-1074호

고창군계획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1일

고 창 군 수

고창군계획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업과 주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과도한 규제사항 등을 정비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사항 신설(안 제9조)
-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 중 “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는 내용 삭제(안 제17조)
-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서 경사도 및 임상도 산정방법 신설(안 제20조)
- 산업·유통 개발진흥지구에서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요건에 맞는 건축물도 허용하는 내용 신설(안 제51조)

-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에 대해 건폐율 완화하는 내용 신설(안 제57조)
- 자연녹지지역의 학교 중 조례에서 정하는 요건에 맞는 건축물의 경우 건폐율 완화하는 내용 신설(안 제57조)
- 산지유통시설에 대하여 건폐율 완화하는 내용 신설(안 제61조)
- 군계획위원회 심의의 동일한 안전에 대한 재심의 등 반복심의 횟수를 변경하는 내용 개정(안 제69조 9항)
-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야영장 허용 하는 내용 신설(별표 14, 별표 17)
-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 허용하는 내용 신설(별표 21)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6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창군수(참조 : 건설도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다. 의견제출할 곳 : 우 585-700/전북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고창군청 건설도시과(전화 063-560-2563, 팩스 063-560-2579)
-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4. 불 임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2. 고창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고창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고창군 조례 제 호

고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제25조제4항제13호에 따라 지구 단위계획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해양부장관과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군관리계획 결정내용 중 면적산정 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

제17조제2호가목 단서 중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를 “공작물”로 한다.

제20조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영 별표 1의2 제1호가목(3)(가)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방법으로 계산한다.

제20조제3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경사도 산정방법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비고 제2호에 따른 방법

나. 임상산정방법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비고 제3호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규칙 별표 1 비고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

제5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영 제79조의”를 “영 제79조제1항에”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79조제3항에 따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계획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 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 대상이 아닐 것
 - 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
 -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군수와 미리 협의하였을 것
 2. 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 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
 - 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 오염·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 할 수 있다.

제57조제1항제16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7조 제1항 제18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7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영 제84조 제6항 제7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는 건폐율을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2.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 하다고 인정될 것
3.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제61조 제1항 중 “영 제84조 제6항”을 “영 제84조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84조 제7항”을 “영 제84조 제8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제7항 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제69조 제9항 중 “위원회의 심의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동일한 안건에 대한 재심의 등 반복심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를 “위원회의 심의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동일한 안건에 대한 재심의 등 반복심의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로 개정한다.

별표 3 제2호사목 중 “유스호스텔의”를 “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하되, 유스호스텔의”로 한다.

별표 5 제2호바목 중 “유스호스텔의”를 “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하되, 유스호스텔의”로 한다.

별표 12 제2호자목 중 “수련시설”을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로 한다.

별표 14 제2호카목을 같은 호 타목으로 하고, 같은 호 카목, 파목 및 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7 제2호차목부터 파목까지를 각각 같은 호 카목부터 하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 차목 및 거목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8 제2호바목 중 “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 시설에 한정한다)”를 “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나목 및 다목에도 불구하고 「농촌용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등이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촌용복합산업지구 내에서 교육시설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로 한다.

별표 21 제2호마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같은 호 바목부터 아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20조제3호에 가목 및 나목의 경우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제17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에 따른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 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 략) 2. 공작물의 설치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 	<p><u>제9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 사항)</u> 제25조제4항제13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해양부장관과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군관리계획 결정내용 중 면적 산정 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 <p>제17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 가. ----- ----- -----.

평 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나. · 다. (생 략)

3. ~ 6. (생 략)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영 제 56조 및 별표1의2제1호가목(3)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 2. (생 략)

3. 제2호의 경사도 산정은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를 중심으로 하여 지형도상에 표준단위면적[대상토지 안의 부지 폭 중 최장인 길이를 변으로 한 정사각형의 범위(최대 100m × 100m 기준)를 표준단위면적으로 한다]을 설정하여 단위면적내 최고표고와 최저표고의 차이를 최단수평

-----.

----- 공
작물-----

-----.

나. · 다. (현행과 같음)

3. ~ 6. (현행과 같음)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

-----.

1. · 2. (현행과 같음)

3. -----

-----.

거리로 나누어 계산한다. <단서
신설>

<신 설>

<신 설>

4. (생 략)

제51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 제한) 영 제79조의 따라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 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 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 2. (생 략)

-----. 단,
영 별표 1의2 제1호가목(3)(가)
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방법으로 계산한다.

가. 경사도 산정방법 : 「산지관
리법시행규칙」 별표 1의3 비
고 제2호에 따른 방법

나. 임상산정방법 : 「산지관리
법시행규칙」 별표 1의3 비고
제3호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규칙 별표 1 비고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

4. (현행과 같음)

제51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 제한) ① 영 제79조제1항에 -----

-----.

-----.

1. · 2.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79조 제3항에 따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계획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 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 대상이 아닐 것

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

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에 필요
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
1항에 따라 군수와 미리 협의
하였을 것

2. 자연녹지지역 · 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해당 용도
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
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
을 모두 갖춘 것

가. 산업 · 유통개발진흥지구 지
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
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
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
는 공장일 것

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
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
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
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
오염 · 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
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

		<u>터까지로 할 수 있다.</u>
제57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과 같다.		제57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 -----.
1. ~ 15. (생 략)		1. ~ 15. (현행과 같음)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단서 신설>		16. ----- ---.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17. (생 략)		17. (현행과 같음)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단서 신설>		18. ----- ---.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19. ~ 21. (생 략) ② ~ ⑥ (생 략) <신 설>		19. ~ 21.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u>⑦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는 건폐율을 30퍼센트 이하로 한다.</u>

1.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
일 것

2.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제61조(농지법에 따른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① 영 제84조 제6항에 따른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 할 수 있는 다

제61조(농지법에 따른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① 영 제84조 제7항-----

 -----.

② 영 제84조제8항-----

음각호의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 2. (생 략)

<신 설>

제69조(회의운영) ① ~ ⑧ (생 략)

⑨ 위원회의 심의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동일한 안건에 대한 재심의 등 반복심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처리기한을 계산할 경우 보완사항 발생시 1회에 한하여 30일간 연장할 수 있으며,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별표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3호 관련)

2. 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

-----.
-----.

1. · 2. (현행과 같음)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
(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제69조(회의운영)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

----- 2회 -----

-----.

[별표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3호 관련)

2. -----
-----.

한다)

가. ~ 바. (생 략)

사.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아. ~ 더. (생 략)

[별표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5호 관련)

2. 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 마.(생 략)

바.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사. ~ 너.(생 략)

[별표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12호 관련)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
----- 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하되, 유스호
스텔의 -----

아. ~ 더. (현행과 같음)

[별표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5호 관련)

2. -----

가. ~ 마.(현행과 같음)

바. -----
----- 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하되, 유스호
스텔의 -----

사. ~ 너.(현행과 같음)

[별표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12호 관련)

2. 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 아.(생 략)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차. ~ 하.(생 략)

[별표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14호 관련)

2. 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 한다)

가. ~ 차. (생 략)

<신 설>

카. (생 략)

타. (생 략)

2. -----

가. ~ 아.(현행과 같음)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차. ~ 하.(현행과 같음)

[별표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14호 관련)

2. -----

가. ~ 차. (현행과 같음)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
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 처리시설만 해당한다)

타. (현행 라목과 같음)

파. (현행 마목과 같음)

<신 설>

[별표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17호 관련)

2. 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가. ~ 자. (생 략)

<신 설>

차. (생 략)

카. (생 략)

타. (생 략)

파. (생 략)

<신 설>

[별표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18호 관련)

하.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9호
의 야영장 시설

[별표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17호 관련)

2. -----

가. ~ 자. (현행과 같음)

차.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

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
시설만 해당한다)

카. (현행 차목과 같음)

타. (현행 카목과 같음)

파. (현행 타목과 같음)

하. (현행 파목과 같음)

거.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

의 야영장 시설

[별표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18호 관련)

2. 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가. ~ 마. (생략)

바.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 및 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정한다)

사. ~ 너. (생략)

[별표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21호 관련)

2. 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경관훼손의 우려가 없고,

2. -----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

----- 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나목 및 다목에도 불구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등이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내에서 교육시설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사. ~ 너. (생략)

[별표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21호 관련)

2. -----

정화시설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갖춘 것에 한정한다.)

가. ~ 라. (생 략)

<신 설>

마. (생 략)

바. (생 략)

사.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
호 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
리시설만 해당한다)

바. (현행 마목과 같음)

사. (현행 바목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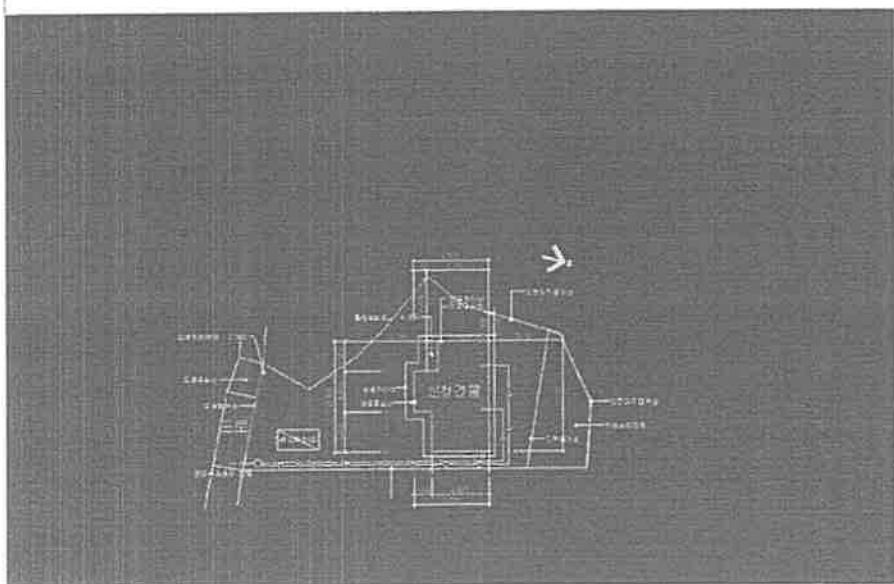
아. (현행 사목과 같음)

(2면 중 제2면)

위 치 도

축척 : 임의

현 황 도

축척 : 1/600, 1/1200

이해관계인의 관련지번

고창군 해리면 하현리 474 번지

30304-26822 대
98.12.28 재정승인210mm×297mm
(보존용지(2종)70g/m²)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11.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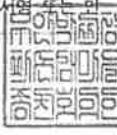
도로 대장

(2면 중 제1면)

지점번호			
대지위치 전라북도 고창군 대산면 증산리		지번 428	
건축주 무안박씨경파종중	법인등록번호 113121-	허가(신고)번호	
도로길이 20.8 m	도로너비 2.5 , 1.5 m	도로면적	22.0 m ²

이해관계인동의서

아래 부분을 「건축법」 제45조에 따른 도로로 지정함에 동의합니다.
※ 지정된 도로는 「건축법」 제2조에 따른 도로로 인정됩니다.

관련지번	동의면적(m ²)	동의일자	토지소유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서명(또는 인장)
428	22.0	20160722	무안박씨경파종중	113121	

작성자 : 직급 사설 8

성명 벽지영

(서명 또는 인장)

확인자 : 직급 사설 6

성명 정재연

(서명 또는 인장)

210mm×297mm [보증용지(2층) 70g/m²]

(3면 중 제2면)

위치도 및 현황도

- 위치도 및 현황도를 작성합니다.



위치도

축척 <임의>



현황도

축척 [] 1/600, [] 1/1,200

[별지 제25호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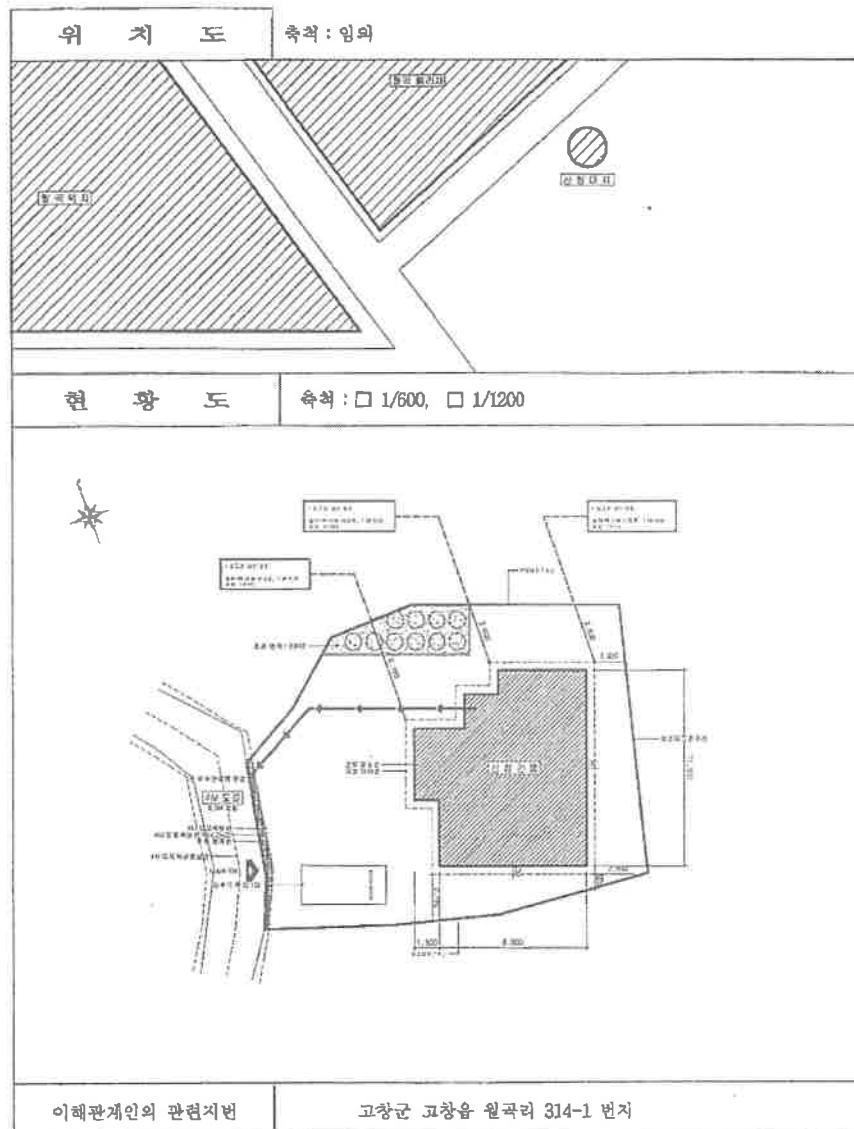
(2면 중 제1면)

도로 대장				지정번호 □□□□~□□□□	
대지 위치	고창군 고창읍 월곡리			지번	314-1
건축주	오미	주민등록번호	831229-2*****	허가(신고)번호	
도로길이	9.5m	도로너비	4.0m	도로면적	4.2m ²
이해관계인 동의서					
아래 부분을 건축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 지정함에 동의합니다. ※ 지정된 도로는 건축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 인정됩니다.					
관련지번	동의면적(m ²)	동의일자	토지소유자	주민등록번호	서명 또는 인
고창군 고창읍 월곡리 314-1	4.2m ²	2016.07	오미	831229-2*****	
작성자: 직급 성명 고창수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30304-26821 대
'98.12.28. 제정승인

210mm×297mm
(보존용지(2종)70g/m²)

(2면중 제2면)



30304-26822대
'98.12.28 제정승인'

210mm×297mm
(보존용지(2종)70g/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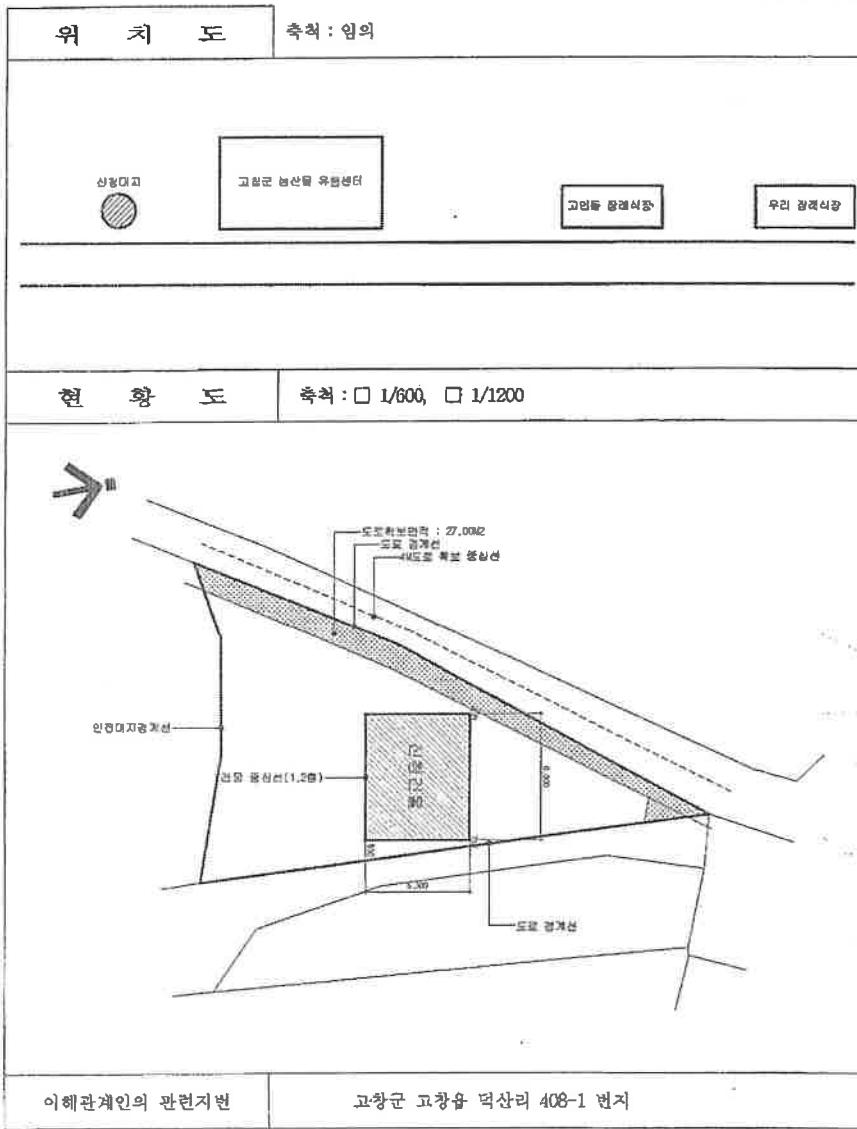
[별지 제25호서식]

(2면중 제1면)

도로 대장				지정번호 □□□□-□□□□	
대지위치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			지번	408-1
건축주	유승	주민등록번호	680303-1*****	허가(신고)번호	
도로길이	26m	도로너비	4.0m	도로면적	27.0m ²
이해관계인 동의서					
아래 부분을 건축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 지정함에 동의합니다. ※ 지정된 도로는 건축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 인정됩니다.					
관련지번	동의면적(m ²)	동의일자	토지소유자	주민등록번호	서명 또는 인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 408-1	27.0m ²	2016.07	유승	680303-1*****	(서명)
작성자: 직급 사설 확인자: 직급 사설					
성명 정자현 (서명 또는 인) 성명 정재민 (서명 또는 인)					

30304-26821대
'98.12.28. 제정승인210mm×297mm
(보존용지(2종)70g/m²)

(2면 중 제2면)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08.12.11>

(2면 중 제1면)

도로 대장			지정번호 □□□□-□□□□		
대지위치	전북 고창군 고창읍 교촌리		지번	100	
건축주	권중심	생년월일	1973.03.10..	허가(신고)번호	
도로길이	4.6 m	도로너비	6.0 m	도로면적	13.0 m ²
이해관계인 동의서					
아래 부분을 「건축법」 제45조에 따른 도로로 지정함에 동의합니다.					
※ 지정된 도로는 「건축법」 제2조에 따른 도로로 인정됩니다.					
관련지번	동의면적(m ²)	동의일자	토지소유자	생년월일	서명 또는 인
100	13.0	2016.07.18.	권중심	1973.03.10.	
합계	13.0				
작성자 : 직급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성명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고창읍(서명 또는 인) 확인자 : 직급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성명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고체인(서명 또는 인)					

30304-26821대

98.12.28 재정승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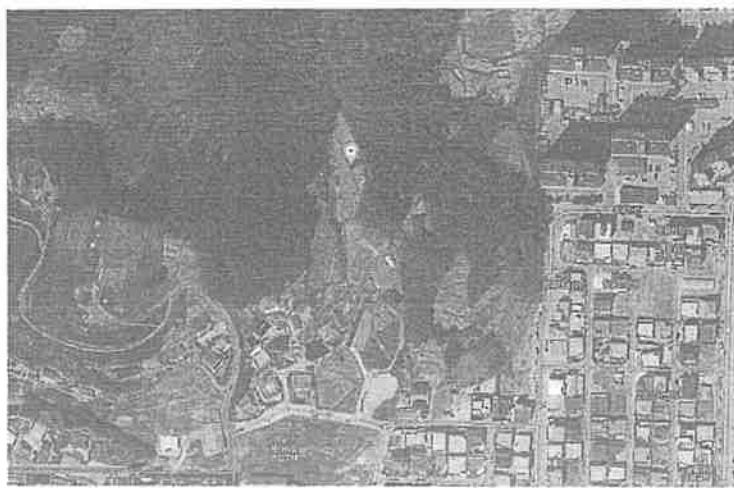
210mm×297mm

(보존용지(2종) 70g/m²)

(2면 중 제2면)

위 차 도

축척 : 임의



현 환 도

축척 : □ 1/600, □ 1/1200



이해관계인의 관련지번

100

30304-26822대

98.12.28 제정승인

210mm×297mm

(보존용지(2종) 70g/m²)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08.12.11>

(2면 중 제1면)

도로 대장			지정번호 □□□□-□□□□		
대지위치	전북 고창군 고창읍 교촌리		지번	100	
건축주	권종심	생년월일	1973.03.10..	허가(신고)번호	
도로길이	32.0 m	도로너비	6.0 m	도로면적	82.0 m ²
이해관계인 등의서					
아래 부분을 「건축법」 제45조에 따른 도로로 지정함에 동의합니다.					
※ 지정된 도로는 「건축법」 제2조에 따른 도로로 인정됩니다.					
관련지번	동의면적(m ²)	동의일자	토지소유자	생년월일	서명 또는 인
100	82.0	2016.07.18.	권종심	1973.03.10.	
합계	82.0				
작성자 : 직급 / 성명 고 269 (서명 또는 인) 확인자 : 직급 / 성명 강재민 (서명 또는 인)					

30304-26821대

98.12.28 제정승인

210mm×297mm

(보존용지(2종) 70g/m²)

(2면 중 제2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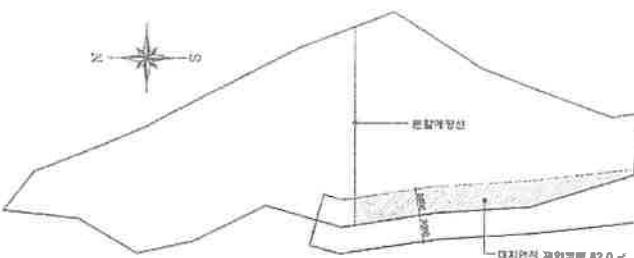
위치도

축척 : 임의



현황도

축척 : □ 1/600, □ 1/1200



이해관계인의 관련지번

100

30304-26822대

98.12.28 제정승인

210mm×297mm

(보존용지(2종) 70g/m²)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08.12.11>

(2면 중 제1면)

도로 대장			지정번호 □□□□-□□□□		
대지위치	전북 고창군 고창읍 교촌리		지번	99-1	
건축주	권종심	생년월일	1973.03.10.	허가(신고)번호	
도로길이	55.0 m	도로너비	6.0 m	도로면적	107.0 m ²
이해관계인 동의서					
아래 부분을 「건축법」 제45조에 따른 도로로 지정함에 동의합니다.					
※ 지정된 도로는 「건축법」 제2조에 따른 도로로 인정됩니다.					
관련지번	동의면적(m ²)	동의일자	토지소유자	생년월일	서명 또는 인
99-1	107.0	2016.07.18.	권종심	1973.03.10.	
합계	107.0				
작성자 : 직급/직위 성명 <u>2. 권종심</u> (서명 또는 인) 확인자 : 직급/직위 성명 <u>기재원</u> (서명 또는 인)					

30304-26821 대

210mm×297mm

98.12.28 제정승인

(보존용지(2종) 70g/m²)

(2면 중 제2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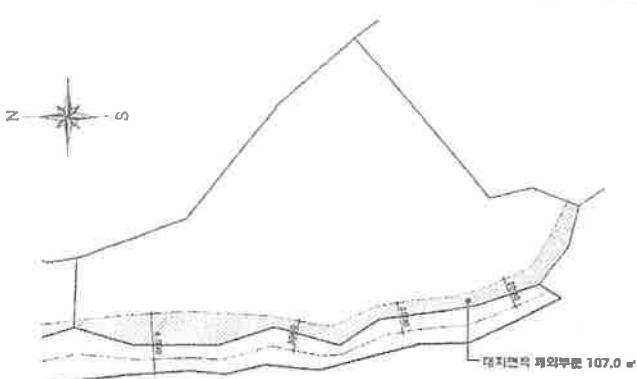
위치도

축척 : 일의



현황도

축척 : □ 1/600, □ 1/1200



이해관계인의 관련지번

99-1

30304-26822대

98.12.28 재정승인

210mm×297mm

(보존용지(2종) 70g/m²)

■ 건축법 시행규칙[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12.12.12>

도로 관리 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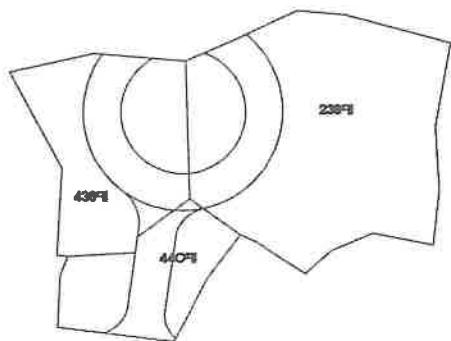
(2년 중 제1번)

사장번호					
대지위치 전라북도 고창군 성송면 판철리		지번 438, 238, 440			
건축주	주 재 민	생년월일(1961.04.14)	허가(신고)번호		
도로길이	88.14m	도로너비	6.0m	도로면적	533.0m ²
이해관계인등의서					
아래 부록을 「검증서」에 첨부하여 다른 도로로 자동차를 통하여 운행하는 차량은 본 저정을 도로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도로로 인정됩니다.					
관련지번	동의면적(m ²)	동의일자	토지소유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서명 또는 인
438	205.0	2016.06	주 재 철	1943.10.01	
238	194.0	2016.06	주 용 환	1925.02.11	사망
440	134.0	2016.06	주 재 민	1961.04.14	
작성자: 직급 시설 8급 성명 변지영 (서명 부록)					
확인자: 직급 시설 6급 성명 장재언 (시명 또는 헌)					

210mm x 297mm [도로당시(2종) 70g/m²]

위치 및 현황도

• 위치도 및 현황도를 병용합니다.



위치도

화면 <일자>



현황도

화면 1/1200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08.12.11>

(2면 중 제1면)

도로대장			지정번호 □□□□-□□□□		
대지위치	고창읍 월산리		지번	516-4 515-8	
건축주	조임환	생년월일	1971.08.22..	허가(신고)번호	
도로길이	15.0 m	도로너비	4.0 m	도로면적	10.0 m ²
이해관계인 동의서					
아래 부분을 「건축법」 제45조에 따른 도로로 지정함에 동의합니다.					
※ 지정된 도로는 「건축법」 제2조에 따른 도로로 인정됩니다.					
관련지번	동의면적(m ²)	동의일자	토지소유자	생년월일	서명 또는 인
516-4	4.0	2016.08.16.	조임환	1971.08.22.	
515-8	6.0	2016.08.16.	조임환	1971.08.22.	
합계	10.0				
작성자 : 직급 서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 직급 서명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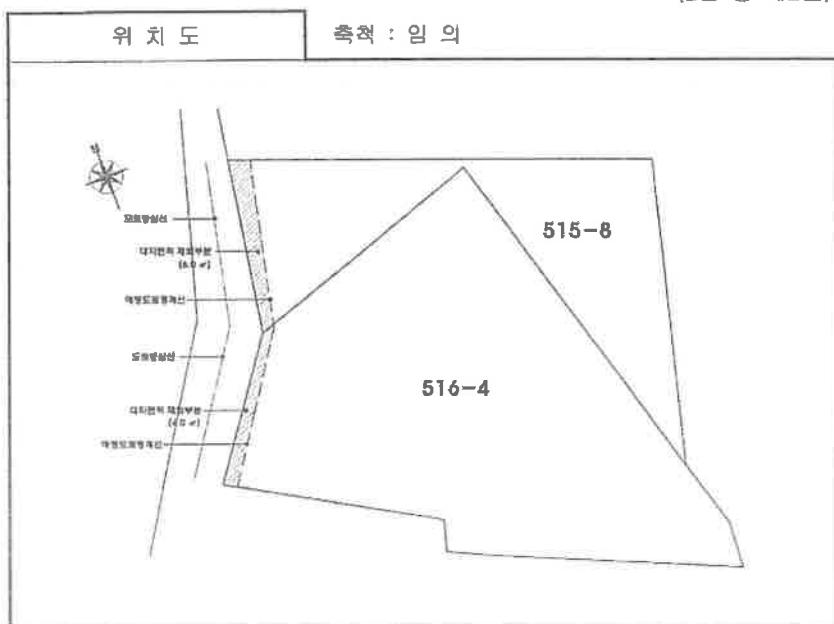
30304-26821 대

98.12.28 제정승인

210mm×297mm

(보존용지(2종) 70g/m²)

(2면 중 제2면)



이해관계인의 관련지번	516-4, 515-8
-------------	--------------

30304-26822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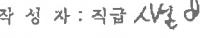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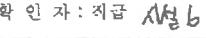
98.12.28 제정승인

210mm×297mm

(보존용지(2종) 70g/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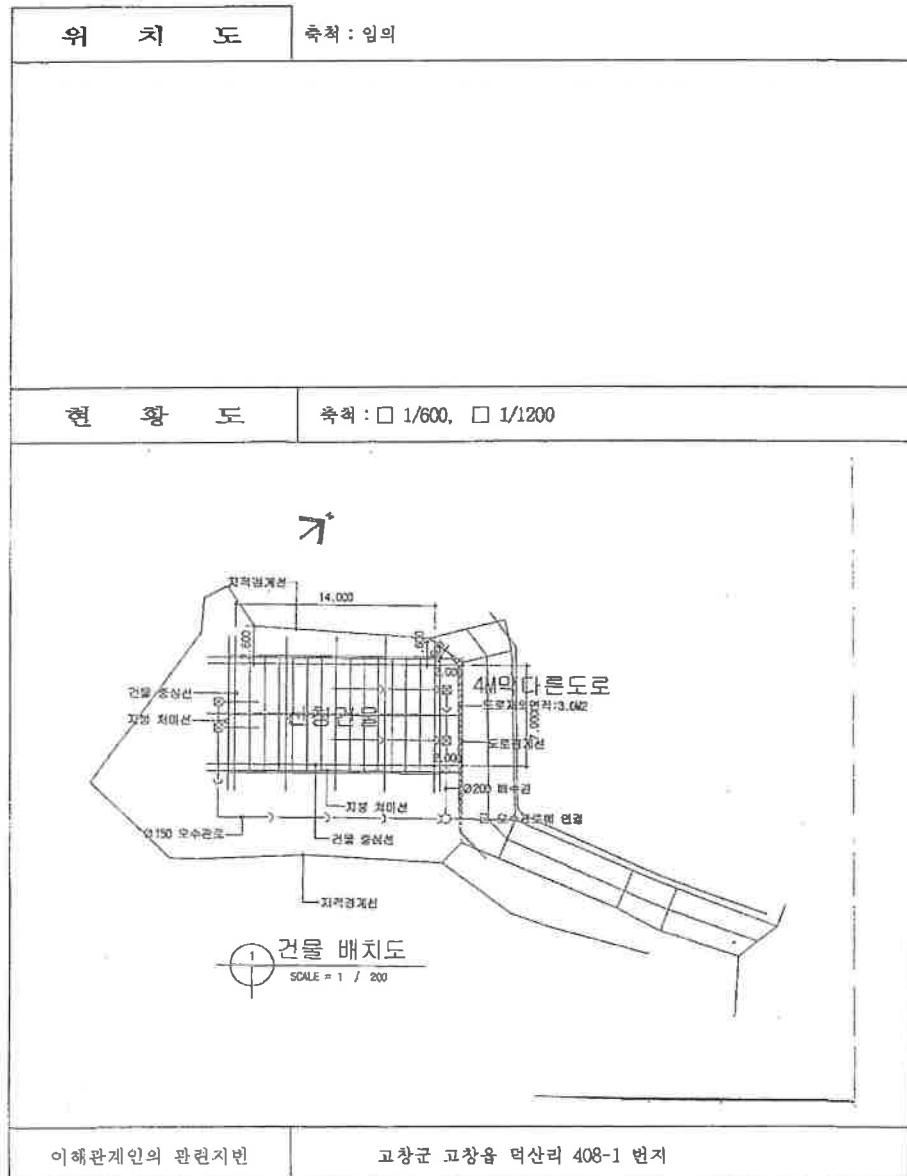
[별지 제25호서식]

(2면증 제1면)

도로대장		지정번호 □□□□-□□□□			
대지위치	고창군 고창읍 죽림리			지번	343
건축주	이영희	주민등록번호	6908810-2**** *	허가(신고)번호	
도로길이	34m	도로너비	4.0m(작다른도로)	도로면적	3.0m ²
이해관계인 동의서					
<p>아래 부분을 건축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 지정함에 동의합니다. ※ 지정된 도로는 건축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 인정됩니다.</p>					
관련지번	동의면적(m ²)	동의일자	토지소유자	주민등록번호	서명 또는 인
고창군 고창읍 죽림리 343	3.0m ²	2016.09	성종두	650810-1**** 	
<p>작성자: 직급  성명 정지연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직급  성명 정재민 (서명 또는 인)</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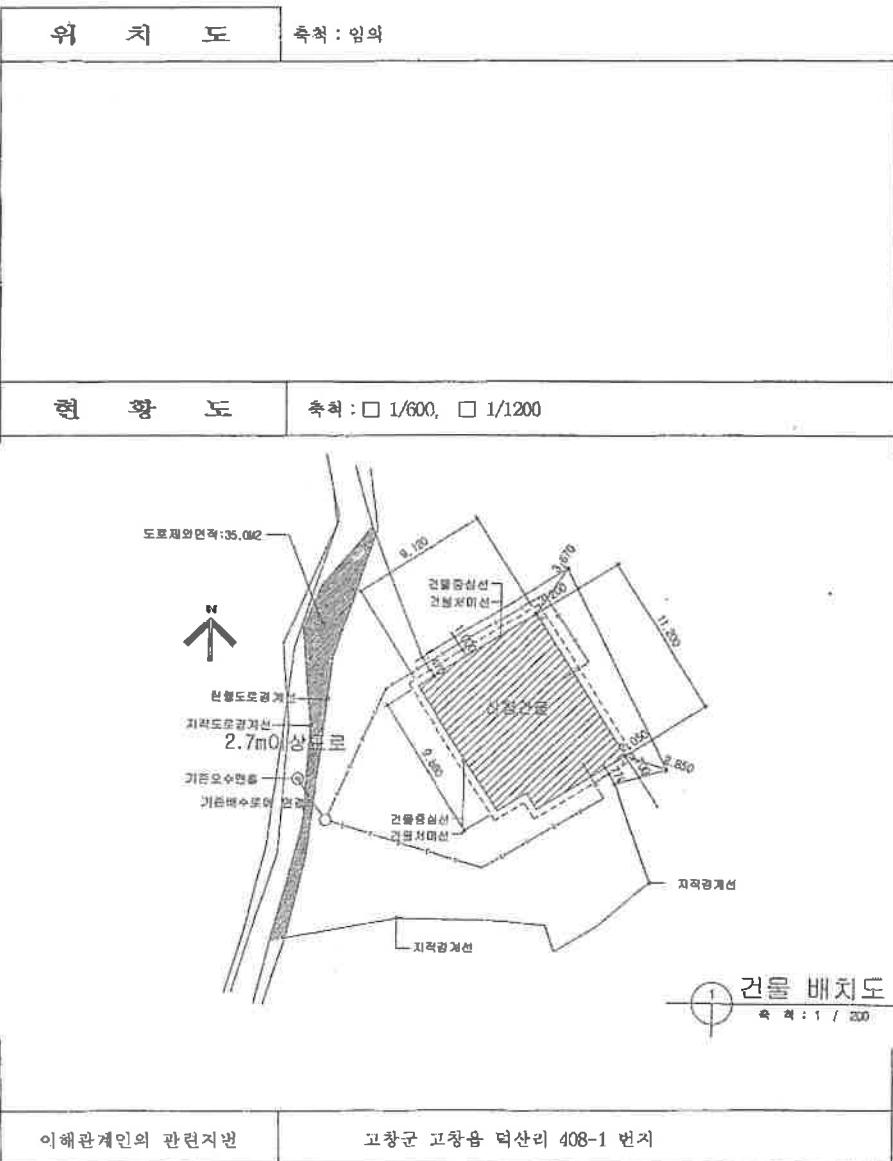
30304-26821 대
'98.12.28. 재정승인210mm×297mm
(보존용지(2종)70g/m²)

(2면증 제2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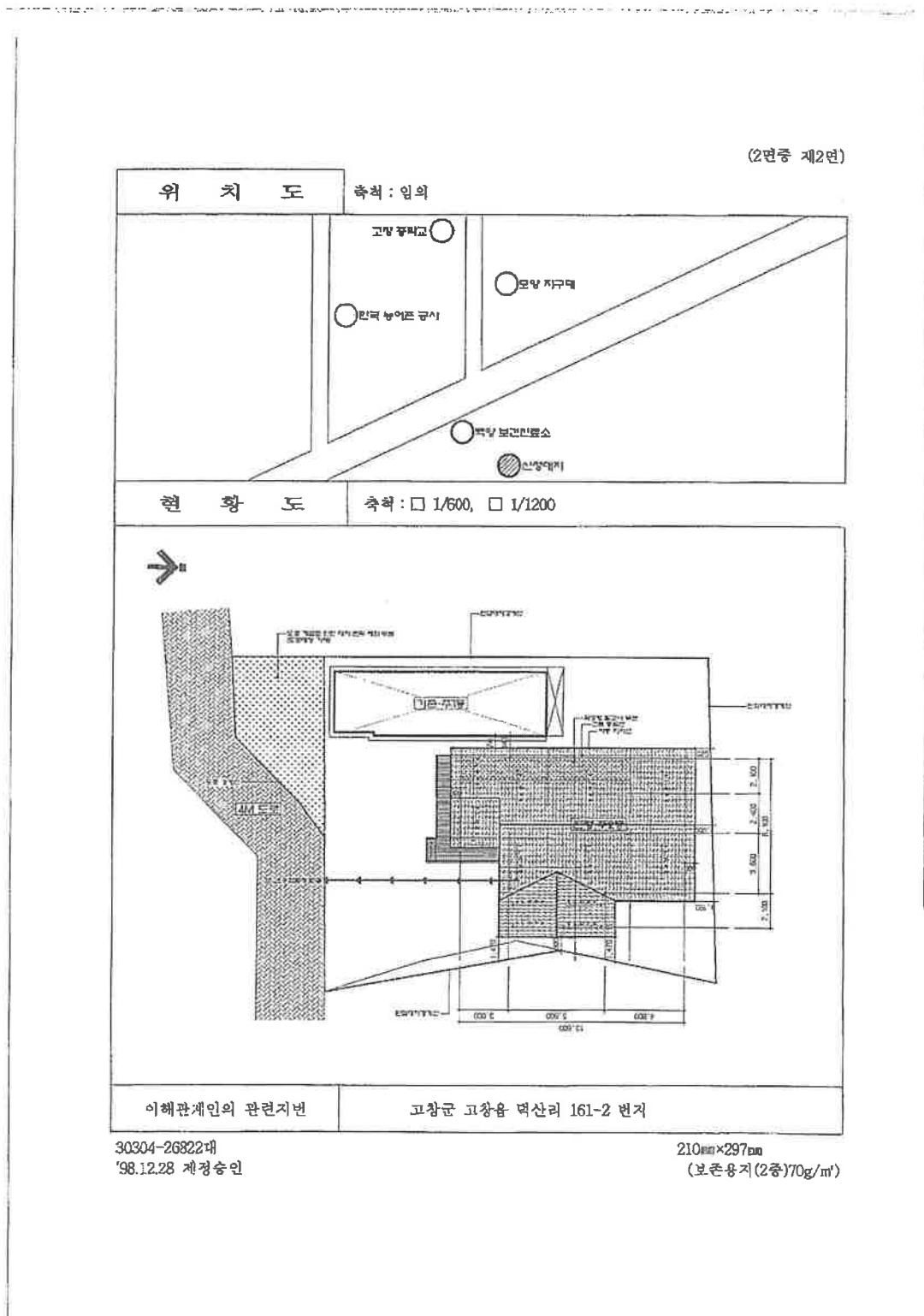
210mm×297mm
(보존용지(2종)70g/m²)

(2면증 제2면)



30304-26822대
'98.12.28 재정승인

210mm×297mm
(보존용지(2종)70g/m²)



도로대장					
대지위치	전북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			지번	47-1
건축주	김영열	주민등록번호	610226-	허가(신고)번호	
도로길이	15.5m	도로너비	3.0m / 2.0m	도로면적	11.0 m ²
이해관계인 동의서					
아래 부분을 건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 지정함에 동의합니다. * 지정된 도로는 건축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 인정됩니다.					
관련지번	동의면적(m ²)	동의일자	토지소유자	주민등록번호	서명 또는 인
47-1	11.0 m ²	2016. 09.	김영열	610226-	
작성자 : 직급 시설 8 성명 정지연 (서명 또는 인) 확인자 : 직급 시설 6 성명 정재민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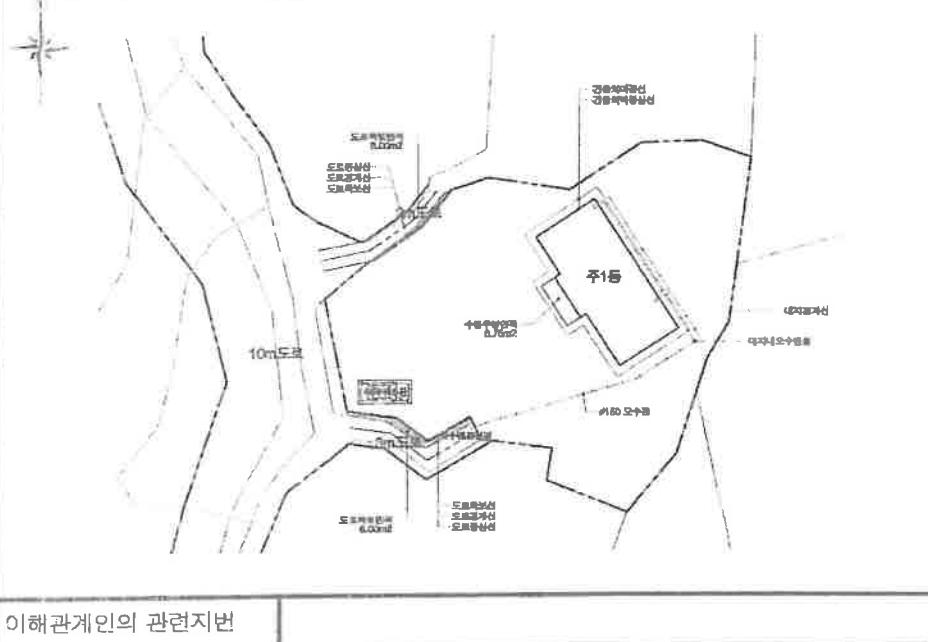
도로대장					
대지위치	전북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			지번	47-1
건축주	김영열	주민등록번호	610226-	허가(신고)번호	
도로길이	15.5m	도로너비	3.0m / 2.0m	도로면적	11.0 m ²
이해관계인 동의서					
아래 부분을 건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 지정함에 동의합니다. * 지정된 도로는 건축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 인정됩니다.					
관련지번	동의면적(m ²)	동의일자	토지소유자	주민등록번호	서명 또는 인
47-1	11.0 m ²	2016. 09.	김영열	610226-	
작성자 : 직급 시설 8 성명 정지연 (서명 또는 인) 확인자 : 직급 시설 6 성명 정재민 (서명 또는 인)					

위 치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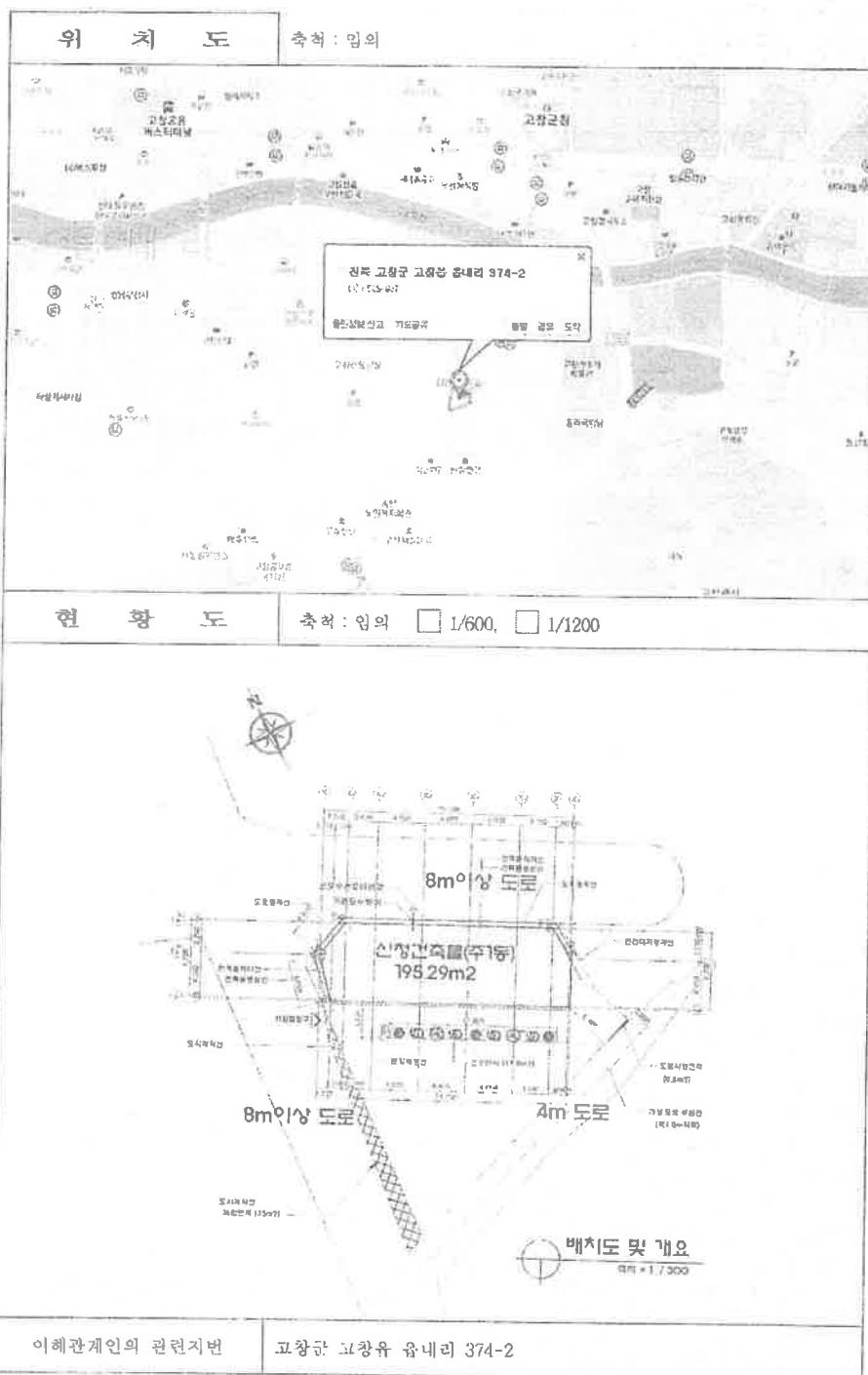
(2면 중 제2면)

현 환 도

축척 : 1 / 500



이해관계인의 관련지번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08.12.11>

(2면 중 제1면)

도로 대장		지정번호 □□□□-□□□□			
대지위치	고성군 교창읍 죽관리			지번	38
건축주	김병우	생년월일	1961. 06. 15.	허가(신고)번호	
도로길이	4 m	도로너비	4 m	도로면적	20.0 m ²
이해관계인 동의서 아래 부분을 「건축법」 제45조에 따른 도로로 지정함에 동의합니다. ※ 지정된 도로는 「건축법」 제2조에 따른 도로로 인정됩니다.					
관련지번	동의면적(m ²)	동의일자	토지소유자	생년월일	서명 또는 인
38	20.0	2016.09.26.	김병우	1961. 06. 15	
합계	20.0				
작성자 : 직급 사설 성명 정지현 (서명 보존 하는 인) 확인자 : 직급 사설 성명 정재민 (서명 보존 하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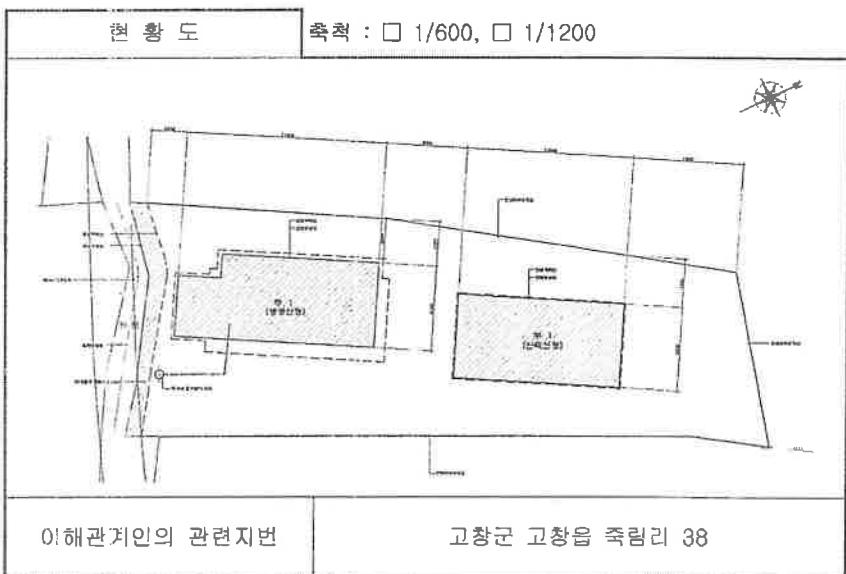
30304-26821대

210mm×297mm

98.12.28 저정승인

(보존용지(2종) 70g/m²)

(2면 중 제2면)



30304-26822대

98.12.28 제점승인

210mm×297mm

(보존용지(2종) 70g/m²)